

1. 개정이유

교육개혁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부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주요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을 연장하며,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활용정원제 운영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0000호, 2022.12.29.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부 하부조직의 개편 및 분장사무 정비(안 제3조, 제3조의3,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1) 글로벌 교육을 선도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국제협력관을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부서별 명칭 및 분장사무를 조정함.
- 2)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하고, 디지털교육기획관 내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교육데이터담당관을 두며, 이에 따라 각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신설함.
- 3) 인재양성정책의 기획,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인재 육성, 온

국민 평생 역량개발 체제 구축을 위하여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개편하고, 인재정책실 내 인재양성정책과 등을 두며, 이에 따라 각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신설함.

- 4)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국가의 교육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혁신지원실을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하고, 기존 교육복지정책국, 학생지원국의 분장 사무를 통합하여 책임교육정책실 내 학교교수학습혁신과 등을 두며, 이에 따라 각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신설함.
- 5) 고등교육 규제를 철폐하여 대학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개혁국을 설치하고, 대학규제개혁국 내 대학규제개혁총괄과 등을 두고, 이에 따라 각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신설함.
- 6) 다양한 교육주체들과의 상호 수평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설치하며, 교육자치협력안전국 내 교육자치협력과 등을 두고, 이에 따라 각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신설함.

나. 주요 국정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증원 및 통합활용정원제 계획에 따른 정원 감축 등 정원 변동사항 반영(안 제21조, 제23조, 별표1, 별표1의3, 별표1의4,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9, 부칙 제1조, 부칙 교육부령제184호 제2조)

- 1) 디지털 교육체제 전환에 관한 기획 및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첨단 분야의 인재양성 및 산학연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 1 -

- 2 -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초등전일제 교육의 도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함.

- 2) 폐교 대학의 청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유치원 급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교육연구사 1명) 및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함.
-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 소청 결정에 관한 이행력 확보에 따른 신설 제도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립특수교육원에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개발의 지원과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지원 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국립국제교육원에 한국어능력시험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함.
- 4)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국립특수교육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과 중앙교육연수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감축함.
- 5) 교육부 하부조직 분장 사무 정비에 따라 한시조직을 폐지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으로 국립대학병원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함.

- 6) 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정원을 감축하고, 개방형직위 임기제공무원 보임 범위를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14. ~ 1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3 -

- 4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2호를 제7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제협력관으로”를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로, “국제협력관은”을 “글로벌교육기획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3호까지,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5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제협력관”을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담당관·예산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양성평등정책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국제교육협력담당관·교육국제화담당관 및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을 “기획담당관·예산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양성평등정책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교육국제화담당관 및 재외교육지원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제교육협력담당관·교육국제화담당관 및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을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교육국제화담당관 및 재외교육지원담당관”으로, “기술서기관으로, 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

·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교육분야 갈등관리제도 총괄 및 운영

제3조제9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6호로 한다.

제3조제10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제11항(종전의 제12항) 제2호 중 “관점을 반영한 정책 과제”를 “관점의 정책 모니터링·과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양성평등 교육 및 여성교육”을 “양성평등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양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3조제13항(종전의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교육협력담당관”을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OECD)”를 “(OECD), 주요 20개국 협의체(G20)”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제3조제15항(종전의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을 “재외교육지원담당관”으로 하고,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외국민교육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2. 재외한국학교의 설립·운영 승인 및 승인 취소, 운영 지원
3. 한국교육원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원

4. 재외한국학교법인의 정관 변경 승인 및 임원의 승인 등 운영 지원
5. 재외교육기관의 예산지원 및 결산
6. 재외교육기관의 평가 및 성과관리
7. 재외교육기관에 대한 조사 및 지도·감독
8.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선발·인사관리 및 업무활동 등 지원
9. 재외한국학교 학사 운영 지원
10. 재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연구 및 지원
11. 재외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센터 지정 및 포털 운영
12. 재외국민 인적자원의 개발·활용
13. 재외교육기관의 회계관리기준 수립 및 개선
14. 재외국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5.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운영 지원 및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16. 한국어 보급 확산을 위한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17.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18.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 수립
19. 재외국민용 교과용도서와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20. 해외 현지 정규학교의 한국어교원 파견 및 양성·연수 지원

제3조의2제3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디지털교육기획관) ①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디지털교육기획관에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디지털인프라담당관·교육데이터담당관을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 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의 기획·총괄
2.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기획·총괄
3. 디지털교육 및 디지털 인재양성 관련 법령·제도 정비
4. 범정부 디지털 정책 관련 협력에 관한 사항
5.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활용에 관한 사항
6. 교육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7. 교육 정보화 관련 제도 및 표준에 관한 사항
8. 교육 관련 기관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운영
9.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협력 및 교육정보 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제기구 및 다자 간 이러닝 협력사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정보화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이러닝 관련 박람회·국

제세미나 등 총괄·지원

11. 이러닝 관련 비영리법인 지도·운영·지원 및 민간기업과의 정보
화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
12.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3.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 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
14. 학교 디지털 문해교육 기본정책 수립·시행
15.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1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운영 지원
17. 에듀테크 기술개발 지원·민간 협력
18. 그 밖에 디지털교육기획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디지털인프라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분야 디지털인프라 관련 정책 기획·총괄·조정
2. 교육 분야 디지털인프라 고도화에 관한 사항
3. 교육정보화 기기 관련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교육정보화 사업 사전협의제도 운영
5. 교육정보화 예산의 검토 및 조정
6.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운영
7. 부 내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부 내 포털, 온나라시스템, 맞춤형 업무시스템의 구축·운영, 대표
홈페이지의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 9 -

26. 교육 관련기관의 보안서버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7. 교육 관련기관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책 수립 및 지원

⑥ 교육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 및 교수·학습 등 교육 분야 데이터 및 통계 정책의 기획·총
괄·조정
2. 교육기본통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3. 교육기본통계 조사 및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운영
4. 교육기본통계 조사기준 및 표준화된 조사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5. 교육기본통계의 운영
6. 교육 관련 주요지표 개발 및 관리
7. 교육 관련 예측통계 산출 및 제공
8. 국제교육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9. 교육통계의 통합 조정 및 품질관리 지원
10. 교육정보통계위원회의 구성·운영
11. 교육정보공시(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기획·총괄
·조정
12. 교육정보공시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13. 교육정보공시 시스템의 구축·운영
14. 교육정보 공시기준 및 표준화된 공시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15. 교육정보공시제의 운영
16. 교육정보통계 활용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 11 -

9.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보급

10.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온라인 교육 민원서비스 운영 지원
1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학생·학부모 서비스 제공
12. 입학 전형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정보의 상급학교에의
제공
13.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
14. 교육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5. 대학 교육전산망협의회 운영 지원
16. 교육 관련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정책 수립·시행
과 관련 법령·제도 개선
17.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교육기관 보안관계 실시
18.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9.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및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관리
20. 교육 관련기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보호
21. 교육 관련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수준에 대한 진단·점검
22. 교육 관련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23. 교육 관련기관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보안적합성 검증 및 보안
취약점 점검·분석
24. 교육 관련기관의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훈련 계획 수립·시행
25. 교육 관련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처리

- 10 -

17.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축·운영
18. 통계 기반 교육정책·연구 지원
19. 교육 관련 정보의 개방에 관한 사항
20.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
진 및 평가 등 총괄
21. 사교육비 조사 실시 지원 및 결과 분석

제6조의 제목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및 제2항 중 “고등교육정책실장”을 각각 “인재정책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중 “고등교육정책관·대학학술정책관 및 산학협력정책관으로
하며, 고등교육정책관·대학학술정책관 및 산학협력정책관”을 “인재정
책기획관·지역인재정책관 및 평생직업교육정책관으로 하며, 인재정책
기획관·지역인재정책관 및 평생직업교육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인재정책기획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
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인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지역인재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
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인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
항제41호부터 제6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인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인재정책실에 인재양성정책과·인재양성지원과·학술연구정책과
·인재선발제도과·지역인재정책과·지역혁신대학지원과·산학협력

- 12 -

취창업지원과·청년장학지원과·평생직업교육기획과·평생학습지원과·중등직업교육정책과 및 고등직업교육정책과를 둔다.

제6조제8항부터 제1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인제양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제양성 정책의 기획·총괄
2. 국가인제양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국가인제양성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4. 범부처 인제양성전략회의 운영
5. 인력수급 전망 관련 조사·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6.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에 관한 사항
7. 대한민국 인재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인제양성 우수기관 인증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인재정책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적역량 전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학교육 혁신정책의 수립·시행 및 공학교육 인증과 관련된 대학 지원
12.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13. 전국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시·도 학부모 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14.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 및 대학연구인력의 국제 공동연구 및 교류 지원
5. 대학 연구활동 실태 조사 및 학술통계 조사·분석
6.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진흥, 학문후속세대 양성, 융복합 연구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인문학 대중화 및 인문학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추진
8. 인문사회·이공 분야 대학 연구소 지원에 관한 사항
9.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연도별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10.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인문학 진흥 전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초교양교육 강화 사업의 수립·시행
13.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운영 및 인문사회 연구결과 사후관리·분석
14. 대학도서관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15. 학술자원 공동 관리 및 활용 체계 구축·운영 지원
16. 특수자료 취급기관 운영 지도 및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지원
17. 연구윤리 확립·확산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18. 한국학 진흥 정책·사업의 기획·추진
19. 글로벌 석·박사 양성에 관한 정책 및 외국박사학위 신고 관련 정

15. 교육 분야 민관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6. 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인제정책기획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인제양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학문 분야별 인제양성 기본계획 수립
2. 산업·학문 분야별 인제양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산업·학문 분야별 특성화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
4. 두뇌한국(BK) 21 사업의 기획·추진
5.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의 사후관리
6. 대학원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7. 대학원 설치·운영, 학사지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8. 법률, 의학·치의학·한의학, 경영·금융·물류 등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인제양성정책 수립 및 관련 전문대학원 제도 개선
9.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민간단체 및 조직 등과의 협력
10. 산업교육센터 지정·운영

⑩ 학술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진흥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 학술지 및 학술대회 지원 등 학술단체 육성·지원
3.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비 운영에 관한 사항

- 책
 20.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선발을 위한 추천에 관한 사항
 2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및 한국연구재단 운영 지원
 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의 운영 지원
- ⑪ 인재선발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학생선발제도 기본정책의 기획·총괄
2. 대입 단순화 및 공정성 제고 등 대학 학생선발 정책의 수립·시행
3. 대학입학 정원 외 특별전형 제도의 관리·운영
4.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입학 지원방법 준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 제도의 관리·운영
7.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운영 및 부정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 제공·분석
10.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실시 지원에 관한 사항
1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연계에 관한 사항
12. 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 지원
13. 대학 학생선발 내실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지원

14. 대입전형 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추진
15.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운영과 관련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6. 대학입학 전형계획 수립·공표 지원에 관한 사항
17.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홍보 총괄·지원
18. 대학 입학전형료 제도에 관한 사항
19. 대입상담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감축에 관한 사항
- ⑫ 지역인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 기획·추진
 6.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기회 및 채용 확대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공기업 등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지역혁신협업체계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범부처 대학 참여 지역혁신 정책 및 사업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

- 17 -

- 행 관리
3.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개설되는 계약학과 제도의 정비 및 운영 지원
 4. 산업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 관리
 5. 대학생 현장실습제도 개선 및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6. 학교기업 제도 관리 및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기획·추진
 7. 기술대학·사내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8.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9. 산학연협력 촉진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10. 산학연 간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공동 활용방안 수립·시행
 11. 산학연협력 박람회(EXPO) 개최 지원
 12. 산학연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13.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운영 지원
 14.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시행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활용 추진
 15. 산학협동재단 및 산업별 산학연협의체의 운영 지원
 16. 산학연협력 공동연구 및 중점연구소 지원
 17. 산학연협력 백서 발간 및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조사
 18.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 및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및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사회의 운영 지원

- 19 -

- 향
10. 국가균형발전 관련 고등교육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1.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체결 및 이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별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4. 지역대학의 행·재정 권한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지역인재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⑬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자체-대학 협업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선도대학의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 선도대학(전문대학 포함)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 거점 구축을 위한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운영 지원
 - ⑭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

- 18 -

20. 대학생의 취업 지원 사업 기획·운영
21. 대학생 해외 인턴십, 현장실습 및 연수취업 지원
22.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장학금 지원
23. 대학의 창업 교육 및 창업 활성화 지원
24. 대학의 창업과 산업 간의 연계 방안 마련
25. 대학생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6. 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 ⑮ 청년장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 총괄·기획 및 점검
 2. 교육부 소관 일자리 재정지원사업 총괄·관리
 3.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4.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5. 교육부 소관 정책·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6.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7.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8. 그 밖에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9.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10.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1. 국가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

- 20 -

12. 대학생 근로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에 관한 사항
 15.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방안 마련 및 대출 제한 대학 선정
 16. 학자금대출계정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17. 학자금 지원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및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18. 대학 등록금 안정화 대책의 수립·시행
 19.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20. 대학 등록금 납부제의 운영·관리
 21. 등록금 감액·면제·반환·징수기일에 관한 사항
 22. 대학생 1명당 교육비 및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
 23. 등록금 통계산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국가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통계 작성 및 분석
 25.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 ⑯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 정책 기획·총괄
 2.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 관련 제도 개선 총괄
 3.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4.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21.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2. 사이버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임원취임 승인, 정관변경, 재산처분 허가 등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23. 사이버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 지원
 24. 사이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평가
 25. 사이버대학 특성화 지원 및 콘텐츠 개발·공동활용 지원
 26.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아세안 공동운영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
 27.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28.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지원
 29.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30.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및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31. 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32. 그 밖에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⑰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공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2. 성인 문해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 등 생활문해에 관한 사항 실시
 4.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5.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出捐) 및 운영 지원
6. 국가 및 지자체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연계·협력·조정
7.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평생교육백서 발간
8.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9. 자격체제 및 국가역량체계의 구축·운영
10.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지원 및 활용
11. 민간자격 관리 및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12. 교육훈련과정 이수에 따른 공인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13.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4. 한국형 온라인 대중강좌(K-MOOC)의 구축·운영
15. 온라인 대중강좌 등을 활용한 산업연계 단기 직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16. 성인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7. 한국방송통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18. 한국방송통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학사관리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19. 사이버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0.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전환 및 학생 정원 조정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간제 등록제,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제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6. 평생교육 관련 시설·단체 및 공익법인의 운영 및 육성, 제도개선 지원
 7. 평생학습계좌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8.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지원 및 대학의 학습경험인정제 지원
 9.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및 지역사회 학습모임 육성 지원
 10. 평생교육 바우처 등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충 지원
 11.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및 운영
 12. 지역사회학교 등 초·중등학교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
 13.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운영 지원
 14. 평생학습박람회 등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15.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 기업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6. 학원, 교습소 및 과외교습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17. 시·도교육청 학원 지도단속 정책의 수립·시행
 18. 학원 관련 통계 관리 및 한국학원총연합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⑱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2.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촉진, 일반 고등학교 직업과정 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

3.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 제·개정
4.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및 해외취업·인턴십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성화고등학교의 체제 개편 지원 및 제도 개선
6. 거점 특성화고등학교의 육성 및 소규모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7.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8.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센터 운영 지원
9.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및 교과용도서의 개발·운영 지원
10.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 교재의 개발 및 개선
11.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취업기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13.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전국 단위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14. 정부부처·산업체·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육성에 관한 사항
15.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시행

- 25 -

8. 전문대학의 학생선발제도 운영과 관련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9. 전문대학 학생선발제도 홍보 지원
10. 전문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 지원
11.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전문대학의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에 관한 사항
13.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4. 전문대학 재정지원 정책 수립 및 개편에 관한 사항
15. 고등직업교육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6. 우수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
17. 직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을 활용한 직업과 학업 연계 프로그램 지원
18. 전문대학·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9. 전문대학·법인 관련 법령·제도개선 및 체제 개편
20. 전문대학·법인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1. 전문대학·법인 제도개선사항 발굴·추진
22. 전문대학 법인의 운영지원 및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23. 전문대학·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
24. 전문대학·법인의 설치·폐지·통폐합에 관한 사항

- 27 -

16. 국가 수준 직업기초능력 평가제도의 수립·시행
 17.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기초능력의 함양 및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8. 산업체 인사의 직업계고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19. 전국단위 기능 경진대회 및 고등학교 직업교육 연구대회의 운영 지원
 20.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병역제도 관련 지원
 2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2.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등 직업계고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23. 중등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⑭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대학 학생 정원조정계획 수립 및 학생정원 자율책임기준 이행 점검
2.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운영학과 지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에 관한 사항
3.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5. 공영형 전문대학 육성정책 수립 및 추진
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복지대학교의 운영 지원
7. 전문대학 입시 관리 운영·지원

- 26 -

25. 전문대학·법인의 위치 변경 및 분교 설치인가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6.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27. 국립 전문대학총장임용 제청 및 사립 전문대학 총장 임면 보고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 제7조의 제목 “(학교혁신지원실)”을 “(책임교육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학교혁신지원실장”을 각각 “책임교육정책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중 “학교혁신정책관 및 학교교육지원관으로 하며, 학교혁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학교교육지원관”을 “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및 교육복지돌봄지원관으로 하며, 책임교육정책관”으로, “한다”를 “하고, 책임교육지원관 및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책임교육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책임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한다.
- ④ 책임교육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0호부터 제6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책임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한다.

- 28 -

⑤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63호부터 제8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책임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책임교육정책실에 학교교수학습혁신과·교육콘텐츠정책과·기초학력진로교육과·교원정책과·교원양성연수와·인성체육예술교육과·학교생활문화과·학생건강정책과·교육복지정책과·유아교육정책과·방과후돌봄정책과·특수교육정책과를 둔다.

제7조제8항부터 제1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⑧ 학교교수학습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수업혁신 지원 기본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초·중등학교 수업혁신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수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의적 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교사의 창의교육 역량 강화
4.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 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
6. 창의적 체험활동의 홍보·지원 및 관련 기관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9. 사이버 학습 운영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시스템의 개발·운영 지원
10. 공공학습관리시스템 및 교원전용디지털콘텐츠플랫폼 운영 지원

관

28. 초·중등 연구학교 지정·운영 총괄·관리
29. 국립학교인 연구학교 및 다른 부처가 요청하는 시·도 지정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30. 초·중등학교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역량 함양 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31. 영어교육 강화 및 영어교사 전문성 제고 정책의 수립·시행
32.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33. 한국교육방송 영어전용방송(EBS-e) 운영 지원
34. 영어교육 격차 해소 및 영어 공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35. 초·중등학교 과학·수학·정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6.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
37.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체험·탐구·활용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총괄
38.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9.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40.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41. 고교학점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42.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수립

11. 한국교육방송공사 고교 강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12. 저소득층·소외계층의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학습 지원
13. 사이버 학습 및 온라인 수업 운영 관련 교육정보 격차해소 지원
14.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개선 총괄 및 입학제도의 개선
15. 고교평준화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시·도 고교평준화 제도의 운영 지원
16.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17.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 총괄
18.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19. 자율형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지정,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20.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21. 초·중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22.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입학전형 영향 평가의 운영 지원
23.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 개선
24. 혁신교육의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
25. 미래교육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26. 초·중등 국립학교(대학 부설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27. 일반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

43. 고교학점제 추진 및 지원 체제 구축·운영
44. 고교학점제 연구·선도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45.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6. 교과특성화학교(예술·체육 계열은 제외한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7. 일반 고등학교 학생 대상 전문대학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지원
48. 농산어촌 등 교육소의 지역의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조성 지원
49.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50. 고교 교과교실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1. 고교학점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원 연수 등 협력 사업 운영
52.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
53. 선택형 교육과정 이수 및 지도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지원
54.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55.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56. 교육과정해설서, 성취수준 및 평가기준 개발 등 지원
57. 교육과정 연수 및 홍보, 대학입시정책 연계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58.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 운영
59. 교육과정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60. 자유학기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61. 자유학기제 지원체제 구축·운영 및 내실화 지원
62. 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63. 그 밖에 책임교육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2.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 개발에 관한 사항 지원
3.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등 질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운영
6. 교과용도서의 가격 결정, 발행·공급, 보상금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7. 교과용도서 발행·공급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8. 교과용도서 개발·활용 관련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국정도서 편찬 계획의 수립·시행
10. 초·중등학교 국정도서 개발 및 관련 연구학교의 운영
11. 검정도서 검정 계획의 수립·시행
12. 검정도서의 검정 업무 수탁기관의 관리·지원
13. 인정도서 개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14. 초·중등학교 국정도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15.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진흥·육성 지원
16. 디지털교과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17. 초·중등학교 교육정보 콘텐츠 및 디지털교과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18. 외국의 역사 왜곡 대응에 관한 사항
19. 해외 교과서 오류 시정에 관한 사항
20. 동북아 역사문제 대책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1. 동북아역사재단 운영 지원
22. 초·중등학교 독도 교육에 관한 사항
23. 초·중등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24. 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⑩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 및 관련 법·제도 개선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및 결과분석 지원
3.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법·제도 개선
4. 인공지능 기반 학력진단 체제의 구축
5. 초·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사업계획의 수립 및 국제협력
6. 초·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시행 및 결과분석 지원
7. 진로교육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8. 초·중등학생의 진로교육 촉진 및 지원
9.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제·학기제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로 탐색 활동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진로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1. 학교급·유형별 진로교육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12.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 및 진로지도 관련 인력 활용 지원
13.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운영 지원
15. 진로체험 정보제공 시스템 등 진로교육 정보망 운영 지원
16. 진로 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17.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
18. 초·중등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19. 진로체험기관 발굴·지원 및 인증에 관한 사항
20. 초·중등학생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지원
21. 진로교육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22.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3. 진로교육 현황 조사 등 진로교육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24. 학생 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학생 평가 관련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26. 학생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7. 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 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8. 학교생활기록의 국가표준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29.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0.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1.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2.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33. 공교육정상화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34. 사교육 경감 대책 총괄
 35. 고등학교 학점 이수·미이수 제도 개선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관한 사항
 36. 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 ⑪ 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시행 및 법령·제도의 운영 개선
2. 초·중등교원 인사제도
3. 초·중등교원의 복무,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책임 및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5. 교장 공모제도의 운영
6. 수석교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원 포상에 관한 사항
8.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
9.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 소속 교원의 정원 관리

10.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11.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12. 스승의 날 행사 기획 및 지원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14.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
15. 교육공무원의 전직에 관한 사항
16.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법령정비·제도 운영
17.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 지원

18. 그 밖에 책임교육지원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⑫ 교원양성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교원 양성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2.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원의 설치·폐지와 학생 정원 조정·운영
3. 교직과정의 설치·폐지 및 교직 관련 학과의 운영 지원
4.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의 인사·학사제도 운영 및 개선
5. 교원 신규임용 시험·임용방식 다양화에 관한 사항
6. 교원 자격검정 기본정책 및 교원 자격검정기준의 수립·시행
7.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원자격증 관리에 관한 사항
8. 초·중등교원 연수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9. 교원 연수체계 개편 및 원격교육연수 제도의 운영 지원

13. 학교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정책 수립·시행
 14. 학교 체육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체육 수업 내실화 지원
 15. 학생선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6.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스포츠강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8.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19. 체육계열 교육과정 운영 학교 지원
 20.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21. 학교 예술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술 수업 내실화 지원
 22. 문화 소외 학생의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3. 예술계열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4. 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5.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지원계획 수립
 26. 예술교육공간 조성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 ⑭ 학교생활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폭력(성폭력은 제외한다)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시행
2.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지도
3.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지원 및 분석·활용
4.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5.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간의 협조·지원
6.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10. 초·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1. 교원연수기관의 설치·폐지·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12. 교원연구대회에 관한 사항
 13. 교원학습연구단체에 관한 사항
 14.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
 15. 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 ⑬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3. 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6. 초·중등학생 자치역량 강화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7. 학생 간 상담 및 학생 간 중재 활동 지원
 8. 학교 내 청소년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9. 초·중등학생 독서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0.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1. 사서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12. 초·중등학생 환경 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7.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의 개발·보급
 8.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보호 대책의 수립·시행
 9.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지원
 10.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11. 전문상담교사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2.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자격연수, 재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
 13. 전문상담교사 관련 학회 및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시행
 15.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운영
 16. 위기학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7.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상담실 지원 및 평가
 18. 지역교육청 학생상담지원센터 지원 및 교육·평가
 19. 위기학생 장기위탁교육 지원 및 평가
 20.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21.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부처 간 및 국가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22. 학생언어문화 개선사업
 23. 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 ⑮ 학생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건강증진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학생건강 실태조사 및 건강감사제도 개선
3. 학생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생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
5. 건강증진학교 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
6. 학교 감염병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7. 초·중등 학생자살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8.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관리·지원
9. 초·중등 학생 정신건강 관련 연구 지원
10. 초·중등학교 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1.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12.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3.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비 지원 계획 등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14.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15. 학교급식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6.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및 우수 식재료 사용에 관한 사항
17.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의 운영
18. 학교 내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19. 교육환경평가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학교 환경 관련 질환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21. 학교급식소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2.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교육 등 학교 응급의료 관리에 관한 사항
23.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원
- ⑯ 교육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41 -

21.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에 대한 교육 지원
22. 대안교육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3.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등 운영 지원
24. 초·중등학력 검정고시정책 수립·시행 및 제도개선
25.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26. 북한이탈 학생 교육 지원
27.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28. 학생·학부모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9. 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⑰ 유아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3.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4.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5. 유치원의 설립·운영 지원
6.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
7. 국제기구와의 유아교육·보육정책 관련 교류·협력
8. 유치원 급식·안전 관련 제도 개선
9. 유아교육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 43 -

1. 초·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2. 교육복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 관련 법령의 제·개정
3.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총괄·조정
4.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활용
5.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 개선·정비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7. 초·중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의 운영
8.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제도의 운영
9.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전달체계 구축
10.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추진
11. 초·중등학교 의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교육 지원·총괄
13.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14. 농어촌 초·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5. 도서·벽지 교육기관의 지정·해제
16. 초·중등학교의 통합 운영 지원
17. 교육 부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추진 총괄
18. 교복가격 안정화 대책의 수립·시행
19. 교육소외 계층·지역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0. 학력인정 다양화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42 -

10. 유아교육과정 운영 지원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
11.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12. 유치원 평가 지원
13. 육아정책연구소의 운영 지원
14. 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 개선
15. 유치원 신설·운영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16. 유치원회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투자 확대에 관한 사항
18.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19.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립·공립 유치원장 임기제도 및 공모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 ⑱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 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2. 초등 돌봄체계 관계 부처 협력 및 연계체계 구축
3.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4. 초·중등 방과후학교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5. 초·중등 방과후학교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및 지원
6. 초·중등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발굴·육성

- 44 -

7. 교육 소외계층의 방과후학교 참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8. 교육 기부(寄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9. 교육기부 관련 공익 법인 관리
10. 교육 기부 기관 인증제 운영
11. 시·도별 교육기부 운영 상담 지원

⑭ 특수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 특수교육통계 및 연차 보고
3.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
4.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교육 지원
5.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6. 통합교육 지원 및 장애 이해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7.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8. 특수교육대상자 평가 지원
9. 전공과(專攻科) 운영 지원
10.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 지원
1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2.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13. 특수교육대상자 문화·예술·체육교육 내실화

- 45 -

1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5.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인력 운영 지원
16. 특수교육교원 수급 계획 및 연수 지원
17.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지원
18.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특수학교 운영 지원
20. 특수교육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2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22.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23. 특수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24. 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교육복지정책국)”을 “(대학규제개혁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를 “대학규제개혁국장은”으로, “보하는 경우”를 “보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학규제개혁국에 대학규제개혁총괄과·대학재정과·대학운영지원과 및 대학경영지원과를 둔다.

제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대학규제개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규제개혁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고등교육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운영 총괄

- 46 -

3. 대학규제개혁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4.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수립 및 대학의 학생정원 자율책임기준 이행 점검
 5.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 총괄
 6. 대학 행정처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행정처분위원회의 구성·운영
 7.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8. 대학 구조개혁 관련 법령·제도 개선 총괄
 9.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및 대학평가위원회 구성·운영·지원
 10.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 수립 및 시행
 11.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활성화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운영
 12.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13. 고등교육 학문분야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14. 국립대학의 설치·이전·폐지·교명 변경에 관한 사항
 15.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 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6. 공립대학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대학규제개혁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대학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47 -

2. 고등교육 재정 현황 분석·확충·총괄 및 재정효율화 방안 마련
 3. 대학 세제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총괄·조정
 4. 대학 자율역량 강화 지원 사업의 관리
 5.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6.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수혜 제한에 관한 사항
 7. 국립대학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9.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 ⑥ 대학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의 학사제도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2. 대학 편입학 제도 운영·개선
 3. 약학대학의 학사제도 운영·개선
 4. 대학과 고등학교와의 연계 심화과정 운영 지원
 5. 대학 원격교육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6. 국립대학 총장 임명 제정에 관한 사항
 7. 국립대학 교원 정원 배정 및 총액인건비제, 성과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립대학 조교 정원 배정 및 연구성과급 지원에 관한 사항
 9. 대학 강사제도 개선·재정 지원 사업 추진 및 비전임교원·조교제도 개선
 10. 대학교원의 인사 제도 개선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48 -

11. 국립대학 소속 대학회계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12. 대학교원 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대학교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13. 대학인권센터 제도 운영·개선
14. 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5. 국립대학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16. 의과대학 설립 부대조건 관리 및 협력병원 제도 개선 추진
17. 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⑦ 대학경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립대학·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사립대학·법인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3. 사립대학의 설치·폐지·통폐합에 관한 사항
4.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5. 사립대학의 위치변경 및 분교 설치 인가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7.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 지원 및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8. 사립대학·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
9. 사립대학·법인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0. 사립대학 총장 임명에 관한 사항

6.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복무·급여·교육훈련 제도 개선
7.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진단
9.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시·도 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11. 학교 평가제도 개선 및 지원
12.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3. 교원단체의 설립·해산 및 운영 지원
14.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15.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조정 및 갈등관리
16.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7. 교육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8. 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19. 유치원 및 초·중등 국립학교에 소속된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0. 시·도 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21. 시·도 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총액인건비 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2.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인사관리 지원,

11.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12. 사립대학 내 민자유치사업 지원
13.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14.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원
15.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지원
16.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분쟁 사학의 정상화 심의 지원
17. 사학발전을 위한 부 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원
18. 사학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추진
19.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및 운영 지원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평생직업교육국)”을 “(교육자치협력안전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육자치협력안전국에 교육자치협력과·지방교육재정과·교육안전정책과·교육시설과를 둔다.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교육자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지방교육자치의 강화 및 협력
3.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운영
4.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정원(교원은 제외한다) 관리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교육협력안전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지방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3. 국제·지방세 제도 및 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
4.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통교부금의 교부 및 교부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6. 특별교부금의 교부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학교회계 제도 및 예산·결산 분석에 관한 사항
8.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련 업무협약체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회계·결산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기준 및 결산 작성기준의 수립과 예산·결산 통계의 분석
11.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회계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립 초·중·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1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통합 등 적정 규모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15.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및 재정 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16. 시·도교육청의 금고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유도 및 제도 개선
18. 시·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및 지방교육 기능분류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방교육재정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0. 지방교육재정의 진단·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등 지방교육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
21. 지방교육재정 통합공시 및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2. 시·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3. 초·중·고·특수학교 학교발전기금 제도에 관한 사항

⑥ 교육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2.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 학교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4. 범 정부차원의 안전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5. 학교안전과 관련한 재난대비 매뉴얼과 안전관련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6. 행정안전부 등 안전과 관련한 재난상황관리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운영

7. 부내 상황실 상황관리 관련 업무의 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8. 학교안전 위기상황 종합관리
 9. 학교안전 관련 위기상황의 접수·전파·보고
 10. 학교안전 관련 국가재난 대비 훈련의 준비·계획·실시·평가
 11. 소관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업무의 종합·총괄
 12.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14.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5. 학교 안전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6. 각급 학교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17.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안전관리업무 지도·감사
 18. 학생안전지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⑦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시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지원
2. 교육시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교육시설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4. 국립학교 시설 예산 편성 및 관리
5. 시설예산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6. 국립대학 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운용
9.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
10. 교육시설의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11. 초·중등학교 시설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2. 교육 차관(借款) 사업의 관리
13.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기준·현황 관리 및 공동실험실습관 운영 관리
14.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사업 추진
15. 대학 기숙사 확충 방안 수립·시행
16. 대학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7. 학교복합시설 정책 수립·시행
18. 디지털교육 체제 전환, 교육과정 연계, 개별화 학습 지원을 위한 노후학교 개선 및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19.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위한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운영
20. 국립대학 노후선박 건조 투자계획 수립 및 시행
21. 교육시설 분야의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2.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운영 지원 및 지도
23. 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제목 “(교육안전정보국)”을 “(삭제)”로 하고, 제1항부터 제7항

을 삭제한다.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제13조제4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11.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제5장 중앙교육연수원

제14조제5항제6호 중 “교육연수기관”을 “교육연수기관 인가·운영 지원 및”으로 한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18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중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을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으로, “진로교육정책과장 및 교육정보화과장”을 “특수교육정책과장 및 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을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하고,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4조)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립대병원·지역 공공의료기관 협업체계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두며, 별표 9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별표 1 중 총계 “633”을 “640”으로 하고, 특정직 계 “85”를 “86”으로 하며, 교육연구사 “53”을 “54”로 하고, 일반직 계 “541”을 “547”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6”을 “47”로 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189”를 “194”로 하며,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식품위생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33”을 “134”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의3 중 총계 “641”을 “648”로 하고, 특정직 계 “93”을 “94”로 하며, 교육연구사 “59”를 “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541”을 “547”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

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6”을 “47”로 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189”를 “194”로 하며,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식품위생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33”을 “134”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1의4를 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53”을 “54”로 하고, 특정직 계 “32”를 “33”으로 하며, 교육연구사 “20”을 “21”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7”을 “46”으로 하고, 특정직 계 “13”을 “12”로 하며,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9”를 “8”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6”을 각각 “27”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를 “5”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74”를 “75”로 하고, 일반직 계 “52”를 “5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1”을 “52”로 한다.

별표 7의2를 삭제한다.

별표 9 중 “(제24조 관련)”을 “(제23조 관련)”으로 하고, 1. 제2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제24조제1항”을 “제23조제1항”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2. 제2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제24조제2항”을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일반직 계 1 다음에 “행정사무관 1”를 신설하며, 3. 제24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4월 30일) “제24조제3항”을 “제23조제3항”으로 하고, 제23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4월 30일) 다음에 “총계 1”를 신설하며, 총계 1 다음에 “일반직 계 1”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식품위생사무관 1 다음에 “4. 제23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를 신설한다.

교육부령 제184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디지털소통팀, 교육공무근로지원팀 및”을 “디지털소통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좌하는 사항, 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을 “보좌하는”으로, “홍보담당관이, 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4항, 별표 1의3, 별표 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9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대변인) ①·② (생략)	제2조(대변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③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12. (생략)	7. (현행 제12호와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기획조정실장) ① (생략)	제3조(기획조정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으로	② ----- ----- ----- ----- <u>글로벌교육기획관</u>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u>으로</u> ----- <u>글로벌교육기획관은</u> ----- ----- -----
③ 정책기획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5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17호의3의 사항에 관하여 기	③ ----- ----- ----- <u>제17호까지</u> ----- ----- ----- -----

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국제협력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9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u>기획담당관</u> · <u>예산담당관</u> · <u>혁신행정담당관</u> · <u>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u> · <u>규제개혁법무담당관</u> · <u>양성평등정책담당관</u> · <u>비상안전담당관</u> · <u>국제교육협력담당관</u> · <u>교육국제화담당관</u> 및 <u>재외동포교육담당관</u> 각 1명을 둔다. ⑥ 기획담당관 · 예산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u>국제교육협력담당관</u> · <u>교육국제화담당관</u> 및 <u>재외동포교육담당관</u>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u>기술서기관</u>으로, <u>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u>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 ④ <u>글로벌교육기획관</u>----- ----- ----- ----- ----- ----- ⑤ ----- <u>기획담당관</u> · <u>예산담당관</u> · <u>혁신행정담당관</u> · <u>규제개혁법무담당관</u> · <u>양성평등정책담당관</u> · <u>비상안전담당관</u> · <u>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u> · <u>교육국제화담당관</u> 및 <u>재외교육지원담당관</u> ----- -----. ⑥ ----- ----- ----- ----- ----- ----- <u>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u> · <u>교육국제화담당관</u> 및 <u>재외교육지원담당관</u>----- ----- <u>기술서기관</u>----- -----	<u>통계사무관</u> · <u>사서사무관</u> · <u>공업사무관</u> · <u>농업사무관</u> · <u>임업사무관</u> · <u>기상사무관</u> · <u>보건사무관</u> · <u>환경사무관</u> · <u>항공사무관</u> · <u>시설사무관</u> · <u>방재안전사무관</u> · <u>전산사무관</u> 또는 <u>방송통신사무관</u>으로 보한다. ⑦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12. (생략) <신설> 13. (생략) ⑧ (생략) ⑨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생략) 1의2. (생략) 2. ~ 5. (생략) 6. ~ 12. (생략) ⑩ 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 ----- ----- ----- ----- ----- -----. ⑦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u>교육분야 갈등관리제도 총괄 및 운영</u>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현행과 같음) 6.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7. ~ 13. (현행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삭제>
---	--	---	---

1. 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및 초·중등 국립학교에 소속된 학교회계직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3. 시·도 교육감 소속 학교회계직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도 교육감 소속 학교회계직원의 총액인건비 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국립대학 소속 대학회계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연구·지원 7.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실태조사 등 현황 관련 8.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련 대외 협력에 관	한 사항 ⑪ (생략) ⑫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생략) 2. 교육 분야 성 주류화(性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과제의 발굴·지원 3. 초·중등학교 양성평등 교육 및 여성교육 정책 추진 총괄 4. 대학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대학의 양성 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5. ~ 9. (생략) ⑬ (생략) ⑭ 국제교육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6. (생략) 7.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아시아유럽회의(ASEM) 등과의 교육 관련 협력	⑩ (현행 제11항과 같음) ⑪ ----- ----- 1. (현행과 같음) 2. ----- ----- <u>관점</u>의 정책 모니터링 · 과제 ----- 3. ----- <u>양성평등교육</u> ----- 4. ----- ----- <u>양성평등</u> ----- 5. ~ 9. (현행과 같음) ⑫ (현행 제13항과 같음) ⑬ <u>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u>----- ----- -----. 1. ~ 6. (현행과 같음) 7. ----- -----(<u>OECD</u>), <u>주요 20개국 협의체(G20)</u>----- -----
--	--	--

8. ~ 15. (생 략) <u><신 설></u> ⑮ (생 략) <u><16>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은</u>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 장을 보좌한다. 1. <u>재외동포 교육 정책의 수립</u> · 시행 및 제도 개선 <u><신 설></u> 2. <u>재외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u> 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원 <u><신 설></u> 3. <u>재외한국학교법인 재산관리</u> 및 정관 승인 등 운영 지원 4. ~ 7. (생 략) <u><신 설></u> 8. <u>재외교육기관 학사 및 운영</u> 지원 9. (생 략) <u><신 설></u>	8. ~ 15. (현행과 같음) 16. <u>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u> <u>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u> ⑭ (현행 제15항과 같음) ⑮ <u>재외교육지원담당관</u>----- -----. 1. <u>재외국민교육지원</u> ----- ----- 2. <u>재외한국학교의 설립·운영</u> <u>승인 및 승인 취소, 운영 지원</u> 3. <u>한국교육원</u>----- -- 4. <u>재외한국학교법인의 정관 변</u> <u>경 승인 및 임원의 승인 등 운</u> <u>영 지원</u> <u><삭 제></u> 5. ~ 8. (현행 제4호부터 제7호 까지와 같음) 9. <u>재외한국학교 학사 운영 지</u> <u>원</u> <u><삭 제></u> 10. (현행 제9호와 같음) 11. <u>재외교육기관 지원을 위한</u>	센터 지정 및 포털 운영 <u><삭 제></u> <u><삭 제></u> 12. <u>재외국민</u> ----- ---- 13. <u>재외교육기관의 회계관리기</u> <u>준 수립 및 개선</u> 14. <u>재외국민교육</u> ----- -- 15. <u>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u> <u>반 운영 지원 및 한국어 교재</u> <u>개발·보급</u> <u><삭 제></u> 17. (현행 제15호와 같음) 18. <u>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u> <u>수립</u> 16. <u>한국어 보급 확산을 위한 행</u> <u>사</u> --- 19. <u>재외국민용</u> ----- -- 20. ----- ----- <u>양성·연수</u> -- -----
--	---	---

제3조의2(사회정책협력관) ①·② (생 략) ③ <u>사회정책총괄담당관은</u>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회정책협력관 을 보좌한다. 1. ~ 3. (생 략) 5. ~ 12. (생 략) 13. <u>사람투자 인재양성 협의체</u> <u>운영</u> ④ <u>사회정책분석팀장은</u> 다음 사 항에 관하여 사회정책협력관을 보좌한다. 1. (생 략) 4. ~ 8. (생 략) <u><신 설></u>	제3조의2(사회정책협력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 11. (현행 제5호부터 제12 호까지와 같음) <u><삭 제></u> ④ ----- -----. 1. (현행과 같음) 2. ~ 6. (현행 제4호부터 제8호 까지와 같음) 제3조의3(디지털교육기획관) ① <u>디지털교육기획관은</u>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 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 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u>디지털교육기획관에</u> <u>디지털</u> <u>교육전환담당관·디지털인프라</u> <u>담당관·교육데이터담당관을</u>	둔다. ③ <u>각 과장은</u> 부이사관·서기관 ·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u>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은</u>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 체제</u> <u>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의 기</u> <u>획·총괄</u> 2. <u>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기획</u> <u>·총괄</u> 3. <u>디지털교육 및 디지털 인재</u> <u>양성 관련 법령·제도 정비</u> 4. <u>법정부 디지털 정책 관련 협</u> <u>력에 관한 사항</u> 5. <u>교육기관에서 디지털 기술의</u> <u>윤리적 활용에 관한 사항</u> 6. <u>교육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u> <u>행계획의 수립·시행</u> 7. <u>교육 정보화 관련 제도 및 표</u> <u>준에 관한 사항</u> 8. <u>교육 관련 기관 정보화책임</u> <u>관 협의회 운영</u> 9. <u>교육정보화 관련 국제협력</u> <u>및 교육정보 서비스의 해외진</u> <u>출 지원에 관한 사항</u>
--	--	--

10. 국제기구 및 다자 간 이러닝 협력사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정보화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이러닝 관련 박람회·국제세미나 등 총괄·지원
11. 이러닝 관련 비영리법인 지도·운영·지원 및 민간기업과의 정보화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
12.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13.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 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
14. 학교 디지털 문해교육 기본 정책 수립·시행
15.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1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운영 지원
17. 에듀테크 기술개발 지원·민간 협력
18. 그 밖에 디지털교육기획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디지털인프라담당관은 다음

-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분야 디지털인프라 관련 정책 기획·총괄·조정
 2. 교육 분야 디지털인프라 고도화에 관한 사항
 3. 교육정보화 기기 관련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교육정보화 사업 사전협의제도 운영
 5. 교육정보화 예산의 검토 및 조정
 6.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운영
 7. 부 내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부 내 포털, 온나라시스템, 맞춤형 업무시스템의 구축·운영, 대표 홈페이지의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보급
 10.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온라인 교육 민원서비스 운영 지원
 1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학생·학부모 서비스 제공

12. 입학 전형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정보의 상급 학교에의 제공
13.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
14. 교육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5. 대학 교육전산망협의회 운영 지원
16. 교육 관련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정책 수립·시행과 관련 법령·제도 개선
17.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교육기관 보안관제 실시
18.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9.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및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관리
20. 교육 관련기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보호
21. 교육 관련기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수준에 대한 진단·점검

22. 교육 관련기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23. 교육 관련기관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보안적합성 검증 및 보안취약점 점검·분석
24. 교육 관련기관의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훈련 계획 수립·시행
25. 교육 관련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처리
26. 교육 관련기관의 보안서버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7. 교육 관련기관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책 수립 및 지원
- ⑥ 교육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 및 교수·학습 등 교육 분야 데이터 및 통계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2. 교육기본통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3. 교육기본통계 조사 및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운영
4. 교육기본통계 조사기준 및

	표준화된 조사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5. 교육기본통계의 운영
	6. 교육 관련 주요지표 개발 및 관리
	7. 교육 관련 예측통계 산출 및 제공
	8. 국제교육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9. 교육통계의 통합 조정 및 품질관리 지원
	10. 교육정보통계위원회의 구성·운영
	11. 교육정보공시(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기획·총괄·조정
	12. 교육정보공시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13. 교육정보공시 시스템의 구축·운영
	14. 교육정보 공시기준 및 표준화된 조사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15. 교육정보공시제의 운영
	16. 교육정보통계 활용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17.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축·운영
	18. 통계 기반 교육정책·연구지원
	19. 교육 관련 정보의 개방에 관한 사항
	20.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1. 사교육비 조사 실시 지원 및 결과 분석
제6조(고등교육정책실) ①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6조(인재정책실) ① 인재정책실장-----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고등교육정책관·대학학술정책관 및 산학협력정책관으로 하며, 고등교육정책관·대학학술정책관 및 산학협력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② ----- 인재정책실장 ----- --- 인재정책기획관·지역인재정책관 및 평생직업교육정책관으로 하며, 인재정책기획관·지역인재정책관 및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한다.	---
③ 고등교육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③ 인재정책기획관----- ----- 제24호----- ----- 인재정책실장-----
④ 대학학술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0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지역인재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5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인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산학협력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45호부터 제54호까지, 제54호의2 및 제54호의3, 제59호부터 제6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41호부터 제6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인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고등교육정책실에 고등교육정책과·지역혁신대학지원과·국립대학정책과·사립대학정책과·학술진흥과·대학재정장학과·대학학사제도과·대입정책과·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인재양성정책과·전문대학정책과 및 전문대학지원과를 둔다.	⑥ 인재정책실에 인재양성정책과·인재양성지원과·학술연구정책과·인재선발제도과·지역인재정책과·지역혁신대학지원과·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청년장학지원과·평생직업교육기획과·평생학습지원과·중등직업교육정책과 및 고등직업교육

⑦ (생략)	정책과를 둔다.
⑧ 고등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현행과 같음)
1.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⑧ 인재양성정책과장-----
2. 대학자율화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
3. 고등교육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총괄	1. 인재양성 정책의 기획·총괄
4.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수립 및 대학의 학생정원 자율책정기준 이행 점검	2. 국가인재양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제정 지원 사업 추진 및 비전임교원·조교 제도 개선	3. 국가인재양성 ----- 운영·개선
6. 대학교원의 인사 제도 개선 및 복무에 관한 사항	4. 범부처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7. 대학교원 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대학교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5. 인력수급 전망 관련 조사·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신설>	6.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통계에 관한 사항
9.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 총괄	7. 대한민국 인재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인재양성 우수기관 인증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내의 인재정책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한 포럼의 운영 및

10. 대학 행정제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행정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19. ~ 22. 삭제	17. ----- 인재정책기획관 -----
11.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적역량 전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고등교육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2. 대학 구조개혁 관련 법령·제도 입안 및 운영	11. 공학교육 혁신정책의 수립·시행 및 공학교육 인증과 관련된 대학 지원	⑨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인재양성지원과장-----
13.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및 대학평가위원회 구성·운영·지원	12.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 산업·학문 분야별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14.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 수립 및 시행	13. 전국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시·도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산업·학문 분야별 인재양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5.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활성화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운영	14.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학문 분야별 특성화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
16.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15. 교육 분야 민관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사업 기획·추진	4. 두뇌한국(BK) 21 사업의 기획·추진
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16. 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5.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의 사후관리
18.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삭 제>	6.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기회 및 채용 확대에 관한 사항	6. 대학원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삭 제>	7.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기업 등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지역혁신 협업체계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대학원 설치·운영, 학사지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8. 범부처 대학 참여 지역혁신	8. 법률, 의학·치의학·한의학,

정책 및 사업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경영·금융·물류 등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인력양성정책 수립 및 관련 전문대학원 제도 개선	7. 국립대학 교원 정원 배정 및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사할
9. 국가균형발전 관련 고등교육정책의 수립 및 시행	9.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민간단체 및 조직 등과의 협력	8. 국립대학 조교 정원 배정 및 연구성과급 지원에 관한 사항	7. 인문학 대중화 및 인문학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추진
10. 지역선도대학의 육성 및 지역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10. 산업교육센터 지정·운영	9. 국립대학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8. 인문사회·이공 분야 대학연구소 지원에 관한 사항
⑩ 국립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학술연구정책과장-----	10.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9.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연도별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1. 국립대학 발전방안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1. 학술진흥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11. 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0.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립대학의 설치·이전·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술지 및 학술대회 지원 등 학술단체 육성·지원	12. 국립대학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11.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3.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및 운영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의과대학 설립 부대조건 관리 및 협력병원 제도 개선 추진	12. 기초교양교육 강화 사업의 수립·시행
4.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 및 대학연구인력의 국제 공동연구 및 교류 지원	14. 공립대학의 운영 지원	13.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운영 및 인문사회 연구결과 사후관리·분석
5.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5. 대학 연구활동 실태 조사 및 학술통계 조사·분석	15.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14. 대학도서관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6. 국립대학 총장 임명 제정에 관한 사항	6.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진흥, 학문후속세대 양성, 융복합 연구 육성·지원에 관한	<신 설>	15. 학술자원 공동 관리 및 활용 체계 구축·운영 지원
			16. 특수자료 취급기준 운영 지

	도 및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지원 17. 연구윤리 확립·확산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18. 한국학 진흥 정책·사업의 기획·추진 19. 글로벌 석·박사 양성에 관한 정책 및 외국박사학위 신고 관련 정책 20.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선발을 위한 추천에 관한 사항 2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및 한국연구재단 운영 지원 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의 운영 지원
⑪ 사립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인제선발제도과장-----
1. 사립대학·법인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시행	1. 대학 학생선발제도 기본정책의 기획·총괄
2. 사립대학·법인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 대입 단순화 및 공정성 제고 등 대학 학생선발 정책의 수

3. 사립대학의 설치·폐지·통폐합에 관한 사항	3. 대학입학 정원 외 특별전형 제도의 관리·운영
4.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4.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사립대학의 위치변경 및 분교 설치 인가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5. 대학입학 지원방법 준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 제도의 관리·운영
7.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 지원 및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7.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사립대학·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	8.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운영 및 부정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9. 사립대학·법인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 공개·분석
10. 사립대학 총장 임명에 관한 사항	10.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실시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1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연계에

12. 사립대학 내 민자유치사업 지원	12. 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 지원
13.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13. 대학 학생선발 내실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지원
14.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원	14. 대입전형 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추진
15.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지원	15.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운영과 관련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6.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분쟁 사학의 정상화 심의 지원	16. 대학입학 전형계획 수립·공표 지원에 관한 사항
17. 사학발전을 위한 부 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원	17.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홍보 총괄·지원
18. 사학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추진	18. 대학 입학전형료 제도에 관한 사항
19.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및 운영 지원	19. 대입상담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20.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감축에 관한 사항
⑫ 학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지역인재정책과장-----

1. 학술진흥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1.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학술지 및 학술대회 지원 등 학술단체 육성·지원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비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 및 대학연구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대학 연구활동 실태 조사 및 학술통계 조사·분석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사업 기획·추진
6.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진흥, 학문후속세대 양성, 융복합 연구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인문학 대중화 및 인문학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추진	7.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기회 및 채용 확대에 관한 사항
8. 이공 분야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기업 등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지역혁신 협업체계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운영 및 인문사회 연구결과 사	9. 범부처 대학 참여 지역혁신 정책 및 사업 간 연계·협력

<u>후관리·분석</u> 10. <u>대학도서관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u> 11. <u>학술자원 공동 관리 및 활용 체계 구축·운영 지원</u> 12. <u>특수자료 취급기관 운영 지도 및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지원</u> 13. <u>연구윤리 확립 및 확산을 위한 위원회 운영 및 관련 정책 추진</u> 14. <u>한국학 진흥 정책·사업의 기획·추진</u> 15. <u>글로벌 석·박사 양성에 관한 정책 및 외국박사학위 신고 관련 정책</u> 16. <u>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선발을 위한 추천에 관한 사항</u> 17. <u>국가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및 한국연구재단 운영 지원</u> 18. <u>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u>	<u>에 관한 사항</u> 10. <u>국가균형발전 관련 고등교육 정책의 수립 및 시행</u> 11. <u>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체결 및 이행 지원 등에 관한 사항</u> 12. <u>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별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u> 13. <u>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u> 14. <u>지역대학의 행·재정 권한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15. <u>그 밖에 지역인재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 <삭 제>	<u>회의 운영 지원</u> ⑬ <u>대학재정장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u> 2. <u>고등교육 재정 현황 분석·확충·총괄 및 재정효율화 방안 마련</u> 3. <u>대학 세제지원 관련 제도 개선</u> 4. <u>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중합 대책의 수립·시행</u> 5. <u>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u> 6. <u>국가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u> 7. <u>국가 교육근로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u> 8. <u>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u> 9. <u>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에</u>	⑬ <u>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u> 1. <u>지자체-대학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2. <u>지역선도대학의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3. <u>산학협력 선도대학(전문대학 포함)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4. <u>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 거점 구축을 위한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5. <u>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운영 지원</u> <삭 제>
--	---	---	---

<u>관한 사항</u> 10. <u>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방안 마련 및 대출 제한 대학 선정</u> 11. <u>학자금대출계정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u> 12. <u>학자금 지원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및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u> 13. <u>대학 등록금 안정화 대책의 수립·시행</u> 14. <u>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u> 15. <u>대학 등록금 납부제의 운영·관리</u> 16. <u>등록금 감액·면제·반환·정수기일에 관한 사항</u> 17. <u>대학생 1명당 교육비 및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u> 18. <u>등록금 통계산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19. <u>국가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통계 작성 및 분석</u> 20. <u>대학 자율역량 강화 지원 사업의 관리</u> 21. <u>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u>	22. <u>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u> 23. <u>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수혜 제한에 관한 사항</u> ⑭ <u>대학학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대학의 학사제도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u> 2. <u>대학생 기초교양교육 강화 정책의 수립·시행</u> 3. <u>대학 편입학 제도 운영·개선</u> 4. <u>약학대학의 학사제도 운영·개선</u> 5. <u>대학과 고등학교와의 연계 심화과정 운영 지원</u> 6. <u>고등교육 학문분야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u> 7. <u>두뇌한국(BK) 21 플러스 사업의 기획·추진</u> 8. <u>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의 사후관리</u> 9. <u>대학원 교육 및 연구에 관한</u>	⑭ <u>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u> 1. <u>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u> 2. <u>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리</u> 3. <u>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개설되는 계약학과 제도의 정비 및 운영 지원</u> 4. <u>산업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 관리</u> 5. <u>대학생 현장실습제도 개선 및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u> 6. <u>학교기업 제도 관리 및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기획·추진</u> 7. <u>기술대학·사내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u> 8. <u>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운영 지원</u> 9. <u>산학연협력 촉진 관련 법령</u>
--	--	--

<u>기본정책의 수립·시행</u> 10. <u>대학원 설치·운영, 학사지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u> 11. <u>법률, 의학·치의학·한의학, 경영·금융·물류 등 전문 지식서비스 분야 인력양성정책 수립 및 관련 전문대학원 제도 개선</u> 12. <u>전문지식서비스 분야 민간 단체 및 조직 등과의 협력 <신 설></u>	<u>· 제도의 운영·개선</u> 10. <u>산학연 간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공동 활용방안 수립·시행</u> 11. <u>산학연협력 박람회(EXPO) 개최 지원</u> 12. <u>산학연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u> 13. <u>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운영 지원</u> 14. <u>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시행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활용 추진</u> 15. <u>산학협동재단 및 산업별 산학연협의체의 운영 지원</u> 16. <u>산학연협력 공동연구 및 중점연구소 지원</u> 17. <u>산학연협력 백서 발간 및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조사</u> 18. <u>산업단지 캠퍼스 인가 및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u> 19. <u>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u>	<u>폴리텍대학 및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사회의 운영 지원</u> 20. <u>대학생의 취업 지원 사업 기획·운영</u> 21. <u>대학생 해외 인턴십, 현장실습 및 연수취업 지원</u> 22. <u>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장학금 지원</u> 23. <u>대학의 창업 교육 및 창업 활성화 지원</u> 24. <u>대학의 창업과 산업 간의 연계 방안 마련</u> 25. <u>대학생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u> 26. <u>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u> ⑮ <u>청년장학지원과장-----</u> -----. 1. <u>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 총괄·기획 및 점검</u> 2. <u>교육부 소관 일자리 재정지원사업 총괄·관리</u> 3. <u>교육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u>
	⑮ <u>대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대학 학생선발제도 기본정책의 기획·총괄</u> 2. <u>대입 단순화 및 공정성 제고 등 대학 학생선발 정책의 수립·시행</u> 3. <u>대학입학 정원 외 특별전형 제도의 관리·운영</u>	

4. <u>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5. <u>대학입학 지원방법 준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u> 6. <u>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 제도의 관리·운영</u> 7. <u>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8. <u>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운영 및 부정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u> 9. <u>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 공개·분석</u> 10. <u>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실시 지원에 관한 사항</u> 11. <u>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연계에 관한 사항</u> 12. <u>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 지원</u> 13. <u>대학 학생선발 내실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u>	4. <u>교육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 발굴·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u> 5. <u>교육부 소관 정책·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u> 6. <u>교육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u> 7. <u>「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u> 8. <u>그 밖에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u> 9. <u>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종합 대책의 수립·시행</u> 10. <u>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u> 11. <u>국가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u> 12. <u>대학생 근로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u> 13. <u>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u>	<u>지원</u> 14. <u>대입전형 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추진</u> 15. <u>대학의 학생선발제도 운영과 관련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u> 16. <u>대학입학 전형계획 수립·공표 지원에 관한 사항</u> 17. <u>대학의 학생선발제도 홍보 총괄·지원</u> 18. <u>대학 입학전형료 제도에 관한 사항</u> 19. <u>대입상담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u> 20. <u>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감축에 관한 사항</u> <신 설>	14. <u>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에 관한 사항</u> 15. <u>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방안 마련 및 대출 제한 대학 선정</u> 16. <u>학자금대출계정 조정·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u> 17. <u>학자금 지원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및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u> 18. <u>대학 등록금 안정화 대책의 수립·시행</u> 19. <u>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u> 20. <u>대학 등록금 납부제의 운영·관리</u> 21. <u>등록금 감액·면제·반환·징수기일에 관한 사항</u> 22. <u>대학생 1명당 교육비 및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u> 23. <u>등록금 통계산출 및 관리에</u>
--	--	---	--

⑯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 총괄 · 기획 및 점검 1의2.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실적 점검 1의3.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1의4. 교육부 소관 정책·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1의5.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1의6.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1의7. 그 밖에 교육부 소관 청년	관한 사항 24. 국가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통계 작성 및 분석 25.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⑯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1.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 정책 기획·총괄 <사 제>		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신 설> 4. 대학생의 취업 지원 사업 기획·운영 5. 교육부 소관 일자리 재정지원사업 총괄·관리 6. 대학생 현장실습제도 개선 및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7. 대학생 해외 인턴십, 현장실습 및 연수취업 지원 8.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장학금 지원 <신 설> 10. 대학의 창업 교육 및 창업 활성화 지원 11. 대학의 창업과 산업 간의 연계 방안 마련 1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및 한국산업기술평리텍대학 이사회의 운영 지원 13.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2.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 관련 제도 개선 총괄 3.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4.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5.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出捐) 및 운영 지원 6. 국가 및 지자체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연계·협력·조정 7.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평생교육백서 발간 8.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9. 자격체제 및 국가역량체제의 구축·운영 10.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지원 및 활용 11. 민간자격 관리 및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12. 교육훈련과정 이수에 따른 공인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13.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기본
--	--	--	--	--

정책의 수립·시행 14.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리 15.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개설되는 계약학과 제도의 정비 및 운영 지원 16. 산업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 관리 17. 학교기업 제도 관리 및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기획·추진 18. 기술대학·사내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19.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20. 산학연협력 촉진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1. 산학연 간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공동 활용방안 수립·시	정책의 수립·시행 14. 한국형 온라인 대중강좌(K-MOOC)의 구축·운영 15. 온라인 대중강좌 등을 활용한 산업연계 단기 직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16. 성인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7. 한국방송통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18. 한국방송통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학사관리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19. 사이버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0.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전환 및 학생 정원 조정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1.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의		행 22. 산학연협력 박람회(EXPO) 개최 지원 23. 산학연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24.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운영 지원 25.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시행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활용 추진 26. 산학협동재단 및 산업별 산학연협의체의 운영 지원 27. 산학연협력 공동연구 및 중점연구소 지원 28. 산학연협력 백서 발간 및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조사 29.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 30.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 및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2. 사이버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임원취임 승인, 정관변경, 재산처분 허가 등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23. 사이버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 지원 24. 사이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평가 25. 사이버대학 특성화 지원 및 콘텐츠 개발·공동활용 지원 26.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아세안 공동운영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 27.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28.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지원 29.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30.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및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	--	--	---	---

31. 산업교육센터 지정·운영	31. 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지원 및 대학의 학습경험인정 제 지원
<신 설>	32. 그 밖에 평생직업교육정책 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및 지역사회 학습모임 육성 지원
⑰ 인재양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⑰ 평생학습지원과장-----	10. 평생교육 바우처 등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충 지원
1. 인재정책 및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전공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11.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및 운영
2.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 성인 문해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12. 지역사회학교 등 초·중등학교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
3.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 등 생활문해에 관한 사항 실시	13.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운영 지원
4.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4. 평생학습박람회 등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국내의 인재정책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5. 시간제 등록제,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제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5.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 기업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적역량 전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관련 시설·단체 및 공익법인의 운영 및 육성, 제도개선 지원	16. 학원, 교습소 및 과외교습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7. 대한민국 인재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7. 평생학습계좌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7. 시·도교육청 학원 지도단속 정책의 수립·시행
8. 인재개발 정책의 기획·총괄	8.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18. 학원 관련 통계 관리 및 한국학원총연합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⑱ 전문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⑱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영학과 지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에 관한 사항
1. 전문대학·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9. 전문대학·법인의 설치·폐지·통폐합에 관한 사항
2. 전문대학·법인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체제 개편	2.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추진, 일반 고등학교 직업과정 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	10. 전문대학·법인의 위치 변경 및 분교 설치 인가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3. 전문대학·법인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 제·개정	11.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4. 전문대학·법인 제도개선 사항 발굴·추진	4.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및 해외취업·인턴십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립 전문대학 총장 임용 제정 및 사립 전문대학 총장 인면 보고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5. 전문대학 법인의 운영지원 및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5. 특성화고등학교의 체제 개편 지원 및 제도 개선	13. 마이스터 대학 도입
6. 전문대학·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 관리	6. 거점 특성화고등학교의 육성 및 소규모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14. 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7. 전문대학 학생 정원 조정계획 수립 및 학생정원 자율적 정기준 이행 점검	7.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5. 공영형 전문대학 육성정책
8.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운	8.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센터 운영 지원
		9.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및 교과용도서의 개발·운영 지원
		10.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 교재의 개발 및 개선
		11.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취업기능 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13.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전국 단위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14. 정부부처·산업체·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육성에 관한 사항
		15.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수립 및 추진	간 연계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시행
1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복지대학교의 운영 지원	16. 국가 수준 직업기초능력 평가제도의 수립·시행
<신 설>	17.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기초능력의 함양 및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8. 산업체 인사의 직업계고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19. 전국단위 기능 경진대회 및 고등학교 직업교육 연구대회의 운영 지원
	20.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병역제도 관련 지원
	2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2.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등 직업계고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23. 중등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① 전문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	①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

항을 분장한다.	-----.
1. 전문대학 입시 관리 운영·지원	1. 전문대학 학생 정원조정계획 수립 및 학생정원 자율책임기준 이행 점검
2. 전문대학의 학생선발제도 운영과 관련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2.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운영학과 지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에 관한 사항
3. 전문대학 학생선발제도 홍보 지원	3.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문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 지원	4. 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5.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영형 전문대학 육성정책 수립 및 추진
6. 전문대학의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에 관한 사항	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복지대학교의 운영 지원
7.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7. 전문대학 입시 관리 운영·지원
8. 전문대학 재정지원 정책 수립 및 개편에 관한 사항	8. 전문대학의 학생선발제도 운영과 관련된 한국전문대학교

9.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 관리	육협의회의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문기술인재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9. 전문대학 학생선발제도 홍보 지원
11. 직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을 활용한 직업과 학업 연계 프로그램 지원	10. 전문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 지원
<신 설>	11.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전문대학의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에 관한 사항
	13.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4. 전문대학 재정지원 정책 수립 및 개편에 관한 사항
	15. 고등직업교육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6. 우수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
	17. 직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을 활용한 직업과 학업 연계 프로그램 지원
	18. 전문대학·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9. 전문대학·법인 관련 법령·제도개선 및 체제 개편	19. 전문대학·법인 관련 법령·제도개선 및 체제 개편
20. 전문대학·법인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0. 전문대학·법인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1. 전문대학·법인 제도개선사항 발굴·추진	21. 전문대학·법인 제도개선사항 발굴·추진
22. 전문대학 법인의 운영지원 및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22. 전문대학 법인의 운영지원 및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23. 전문대학·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	23. 전문대학·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
24. 전문대학·법인의 설치·폐지·통폐합에 관한 사항	24. 전문대학·법인의 설치·폐지·통폐합에 관한 사항
25. 전문대학·법인의 위치 변경 및 분교 설치인가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5. 전문대학·법인의 위치 변경 및 분교 설치인가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6.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26.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27. 국립 전문대학총장임용 제청 및 사립 전문대학 총장 임면 보고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27. 국립 전문대학총장임용 제청 및 사립 전문대학 총장 임면 보고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제7조(학교혁신지원실) ① 학교혁	제7조(책임교육정책실) ① 책임교

신지원실장은 장학관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u>학교혁신지원실장</u>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u>학교혁신정책관 및 학교교육지원관</u>으로 하며, <u>학교혁신정책관</u>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u>육정책실장</u>----- ----- ----- ----- -----. ② ----- ----- <u>책임교육정책실장</u> ----- --- <u>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및 교육복지돌봄지원관</u>으로 하며, <u>책임교육정책관</u>----- ----- ----- ----- ----- ----- ----- ----- ----- ----- <u>하</u> <u>고, 책임교육지원관 및 교육복지돌봄지원관</u>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u>책임교육정책관</u>----- ----- ----- <u>제39호</u>----- ----- ----- <u>책임교육정책실장</u>----- -----. ④ <u>책임교육지원관</u>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3항제40호부터 제6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u>책임교육정책실장</u>을 보좌한다. ⑤ <u>교육복지돌봄지원관</u>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3항제63호부터 제8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u>책임교육정책실장</u>을 보좌한다. ⑥ <u>책임교육정책실</u>에 <u>학교교수학습혁신과</u>·<u>교육콘텐츠정책과</u>·<u>기초학력진로교육과</u>·<u>교원정책과</u>·<u>교원양성연구과</u>·<u>인성체육예술교육과</u>·<u>학교생활문화과</u>·<u>학생건강정책과</u>·<u>교육복지정책과</u>·<u>유아교육정책과</u>·<u>방과후</u>
--	--	---

⑥ (생 략) ⑦ <u>학교정책과</u>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개선 <u>총괄 및 입학제도의 개선</u> 2. 고교평준화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시·도 고교평준화 제도의 운영 지원 3.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4.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 총괄 5.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6. 자율형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지정,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7.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8. 초·중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9.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입학	<u>돌봄정책과</u>·<u>특수교육정책과</u>를 둔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u><사 제></u> <u><사 제></u>	<u>전형 영향 평가의 운영 지원</u> 10. <u>공교육정상화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u> 11. <u>사교육 경감 대책 총괄</u> 12. <u>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 개선</u> 13. <u>혁신교육의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u> 14. 초·중등 국립학교(대학부설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15. <u>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u> 15의2. <u>지방교육자치의 강화 및 협력</u> 15의3. <u>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u> 16. <u>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정원(교원은 제외한다) 관리</u> 17. <u>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복무·급여·교육훈련 제도 개선</u> 18. <u>시·도교육청 직원(학교회</u>
---	---	---

계직원은 제외한다) 총액인건 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 석·진단 20.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협력 에 관한 사항 22. 시·도 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23. 학교 평가제도 개선 및 지원 24. 그 밖에 학교혁신지원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 니하는 사항 ⑧ 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 · 시행 및 법령·제도의 운영 개선 2. 초·중등교원 인사제도 3. 초·중등교원의 복무,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책임 및 근무기강 확 립에 관한 사항	⑧ 학교교수학습혁신과장----- -----. 1. 초·중등학교 수업혁신 지원 기본정책의 수립·시행에 관 한 사항 2. 초·중등학교 수업혁신의 지 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수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의적 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교사의 창의교육 역량 강 화 4.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 정 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장 공모제도의 운영 6. 수석교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원 포상에 관한 사항 8.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 9.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 교 소속 교원의 정원 관리 10.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에 관 한 사항 11.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 동 보호에 관한 사항 12. 스승의 날 행사 기획 및 지 원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14.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에 관 한 사항 15. 교육공무원의 전직에 관한 사항	5.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 6. 창의적 체험활동의 홍보·지 원 및 관련 기관 간 연계에 관 한 사항 7.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지원 ----- 8.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에 관 한 사항 9. 사이버 학습 운영 지원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시스템의 개발·운영 지원 10. 공공학습관리시스템 및 교 원전용디지털콘텐츠플랫폼 운 영 지원 11. 한국교육방송공사 고교 강 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12. 저소득층·소외계층의 한국 교육방송공사 수능학습 지원 13. 사이버 학습 및 온라인 수업 운영 관련 교육정보 격차해소 지원 14.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개 선 총괄 및 입학제도의 개선 15. 고교평준화 기본정책의 수 립·시행 및 시·도 고교평준
--	---	--	--

16.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7. 교원단체의 설립·해산 및 운영 지원 18.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기구와 의 협력 19.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에 대한 총괄·조정 및 갈등 관리 20.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 ·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 립·시행 및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21.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 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 육삼락회의 운영 지원 22.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 방공무원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23.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 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 선 24. 교육관련 시민단체와의 협 력에 관한 사항	화 제도의 운영 지원 16.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17.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제도 총괄 18.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 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19. 자율형 공립·사립 고등학 교 및 자율학교의 지정,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20.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 도 개선 21. 초·중등 사립학교 및 학교 법인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22.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입학 전형 영향 평가의 운영 지원 23.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 개선 24. 혁신교육의 확산을 위한 제 도개선 지원	25. 전국 학부모지원센터의 지 정·운영 및 시·도 학부모 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신 설>	25. 미래교육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26. 초·중등 국립학교(대학 부 설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정책의 수 립·시행 및 제도 개선 27. 일반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 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괄 28. 초·중등 연구학교 지정· 운영 총괄·관리 29. 국립학교인 연구학교 및 다 른 부처가 요청하는 시·도 지정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30. 초중등학교 디지털 역량 함 양 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 디지털 역량 함양 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31. 영어교육 강화 및 영어교사 전문성 제고 정책의 수립·시 행 32.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정책 의 수립·시행
---	--	---	--

33. 한국교육방송 영어전용방송 (EBS-e) 운영 지원
 34. 영어교육 격차 해소 및 영어 공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35. 초·중등학교 과학·수학·정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6.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
 37.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체험·탐구·활용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총괄
 38.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9.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40.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 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41. 고교학점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42.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개

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수립
 43. 고교학점제 추진 및 지원 체제 구축·운영
 44. 고교학점제 연구·선도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45.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6. 교과특성화학교(예술·체육 계열은 제외한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7. 일반 고등학교 학생 대상 전문대학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지원
 48. 농산어촌 등 교육소의 지역의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조성 지원
 49.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50. 고교 교과교실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1. 고교학점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원 연수 등 협력 사업 운영
 52.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

53. 선택형 교육과정 이수 및 지도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지원
 54.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55.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56. 교육과정해설서, 성취수준 및 평가기준 개발 등 지원
 57. 교육과정 연수 및 홍보, 대학입시정책 연계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58.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 운영
 59. 교육과정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60. 자유학기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61. 자유학기제 지원체제 구축·운영 및 내실화 지원
 62. 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63. 그 밖에 책임교육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

니하는 사항
 ⑨ 교육콘텐츠정책과장-----

 1.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2.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 개발에 관한 사항 지원
 3.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등 질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운영
 6. 교과용도서의 가격 결정, 발행·공급, 보상금 및 재발행에 관한 사항
 7. 교과용도서 발행·공급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8. 교과용도서 개발·활용 관련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국정도서 편찬 계획의 수립

<u>교육연수 제도의 운영 지원</u>	<u>· 시행</u>
<u>10. 초·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u>	<u>10. 초·중등학교 국정도서 개발 및 관련 연구학교의 운영</u>
<u>11.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기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u>	<u>11. 검정도서 검정 계획의 수립</u>
<u>12. 교원연구대회에 관한 사항</u>	<u>· 시행</u>
<u>13. 교원학습연구년제에 관한 사항</u>	<u>12. 검정도서의 검정 업무 수탁 기관의 관리·지원</u>
<u>14.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u>	<u>13. 인정도서 개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u>
<u><신 설></u>	<u>14. 초·중등학교 국정도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u>
	<u>15.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진흥·육성 지원</u>
	<u>16. 디지털교과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u>
	<u>17. 초·중등학교 교육정보 콘텐츠 및 디지털교과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u>
	<u>18. 외국의 역사 왜곡 대응에 관한 사항</u>
	<u>19. 해외 교과서 오류 시정에 관한 사항</u>
	<u>20. 동북아 역사문제 대책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u>

<신 설>

<u>21. 동북아역사재단 운영 지원</u>
<u>22. 초·중등학교 독도 교육에 관한 사항</u>
<u>23. 초·중등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u>
<u>24. 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u>
<u>⑩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 및 관련 법·제도 개선</u>
<u>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및 결과분석 지원</u>
<u>3.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법·제도 개선</u>
<u>4. 인공지능 기반 학력진단 체제의 구축</u>
<u>5. 초·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사업계획의 수립 및 국제협력</u>
<u>6. 초·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시행 및 결과분석 지원</u>
<u>7. 진로교육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u>
<u>8. 초·중등학생의 진로교육 촉진</u>

<u>진 및 지원</u>
<u>9.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제·학기제 및 중학교 자유학기 진로탐색 활동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u>10. 진로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u>
<u>11. 학교급·유형별 진로교육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u>
<u>12.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 및 진로지도 관련 인력 활용 지원</u>
<u>13.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u>14.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운영 지원</u>
<u>15. 진로체험 정보제공 시스템 등 진로교육 정보망 운영 지원</u>
<u>16. 진로 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u>
<u>17.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u>
<u>18. 초·중등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u>

<u>19. 진로체험기관 발굴·지원 및 인증에 관한 사항</u>
<u>20. 초·중등학생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지원</u>
<u>21. 진로교육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u>
<u>22.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u>
<u>23. 진로교육 현황 조사 등 진로교육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u>
<u>24. 학생 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25. 학생 평가 관련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u>
<u>26. 학생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u>27. 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 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28. 학교생활기록의 국가표준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u>
<u>29.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30.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1.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2.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33. 공교육정상화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34. 사교육 경감 대책 총괄 35. 고등학교 학점 이수·미이수 제도 개선 및 최소 성취기준 보장지도에 관한 사항 36. 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제 구축·운영 4. 고교학점제 연구·선도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5. 온라인·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과특성화학교(예술·체육 계열은 제외한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일반 고등학교 학생 대상 전대학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지원 8.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 지역의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조성 지원 9.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0. 고교 교과교실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점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연계 연수 등 협력 사업 운영 12. 일반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괄 13. 일반 고등학교 내 선택형 교육과정 이수 및 지도를 위한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책임 및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5. 교장 공모제도의 운영 6. 수석교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원 포상에 관한 사항 8.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 9.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 소속 교원의 정원 관리 10.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11.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12. 스승의 날 행사 기획 및 지원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⑪ 고교교육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교학점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수립 3. 고교학점제 추진 및 지원 체	⑪ 교원정책과장----- 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시행 및 법령·제도의 운영 개선 2. 초·중등교원 인사제도 3. 초·중등교원의 복무, 정계			

전담조직 운영 지원 14.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 15.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6.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17.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8.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19.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20. 교과별 교육과정해설서, 성취수준 및 평가기준 개발 등 지원 21. 교육과정 연수 및 홍보, 대학입시정책 연계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22.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 운영 23. 교육과정 정보서비스에 관	14.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 15. 교육공무원의 전직에 관한 사항 16.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법령정비·제도 운영 17.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 지원 18. 그 밖에 책임교육지원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 제>		한 사항 24. 영어교육 강화 및 영어교사 전문성 제고 정책의 수립·시행 25.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6. 한국교육방송 영어전용방송(EBSe) 운영 지원 27. 영어교육 격차 해소 및 영어공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28. 자유학기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29. 자유학기제 지원체제 구축·운영 및 확대·발전 지원 30. 초·중등학교 과학·수학·정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1.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 32.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인프라 구축·운영, 체원·탐구·활용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융합인재교육 활	
---	--	--	--	--

<u>성화 총괄</u> ⑫ 교과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2. 교과용도서 편찬기준 및 집필기준의 수정·보완에 관한 사항 2의2.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등 질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운영 5. 교과용도서의 가격 결정, 발행·공급, 보상금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5의2. 교과용도서 발행·공급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5의3. 교과용도서 개발·활용 관련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정도서 편찬 계획의 수립	⑫ 교원양성연수과장----- -----. 1. 초·중등교원 양성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2.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원의 설치·폐지와 학생 정원 조정·운영 <삭 제> 3. 교직과정의 설치·폐지 및 교직 관련 학과의 운영 지원 4.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의 인사·학사제도 운영 및 개선 5. 교원 신규임용 시험·임용방식 다양화에 관한 사항 <삭 제> 6. 교원 자격검정 기본정책 및	· 시행 7. 초·중등학교 국정도서 개발 및 관련 연구학교의 운영 7의2. 검정도서 검정 계획의 수립·시행 8. 검정도서의 검정 업무 수탁 기관의 관리·지원 8의2. 인정도서 인정 계획의 수립·시행 9. 초·중등학교 국정도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10. 외국의 역사 왜곡 대응에 관한 사항 11. 해외 교과서 오류 시정 및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에 관한 사항 12. 동북아 역사문제 대책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3. 동북아역사재단 운영 지원 14. 초·중등학교 독도 교육에 관한 사항 15. 초·중등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교원 자격검정기준의 수립·시행 7.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원자격증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8. 초·중등교원 연수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삭 제> 9. 교원 연수체제 개편 및 원격교육연수 제도의 운영 지원 10. 초·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1. 교원연수기관의 설치·폐지·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12. 교원연구대회에 관한 사항 13. 교원학습연구년제에 관한 사항 14.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 15. 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	---	---	--

⑬ 교수학습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 평가 관련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생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학교생활기록의 국가표준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초·중등학교 수업혁신 지원 기본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8. 초·중등학교 수업혁신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수준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창의적 교육 우수사례 확산	⑬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 1.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3. 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6. 초·중등학생 자치역량 강화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7. 학생 간 상담 및 학생 간 중재 활동 지원 8. 학교 내 청소년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9. 초·중등학생 독서교육 기본	및 교사의 창의교육 역량 강화 10.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전문성 향상 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 12. 창의적 체험활동의 홍보·지원 및 관련 기관 간 연계에 관한 사항 13.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15. 초·중등 연구학교 지정·운영 총괄·관리 16. 국립학교인 연구학교 및 다른 부처가 요청하는 시·도 지정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17.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8.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정책의 수립·시행 및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0.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1. 사서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12. 초·중등학생 환경 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13. 학교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정책 수립·시행 14. 학교 체육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체육 수업 내실화 지원 15. 학생선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6.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스포츠강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8.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19. 체육계열 교육과정 운영 학
---	--	--	---

	<u>교 지원</u> 20. <u>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u> 21. <u>학교 예술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술 수업 내 실화 지원</u> 22. <u>문화 소외 학생의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u> 23. <u>예술계열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24. <u>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u> 25. <u>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지원 계획 수립</u> 26. <u>예술교육공간 조성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u>		<u>행과 학생 인권조례에 관한 사항</u> 4. <u>초·중등학교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u> 5. <u>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u> 6. <u>초·중등학교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사항</u> <u><신 설></u> 8. <u>초·중등학생 자치역량 강화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u> 9. <u>학생 간 상담 및 학생 간 중재 활동 지원</u> 10. <u>학교 내 청소년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u> 11. <u>초·중등학생 독서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u> 12. <u>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u> 13. <u>초·중등학생 환경 교육정책의 수립·시행</u>	4. <u>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u> 5. <u>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간의 협조·지원</u> 6. <u>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u> 7. <u>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의 개발·보급</u> 8. <u>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보호 대책의 수립·시행</u> 9. <u>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지원</u> 10. <u>학교상담 활성화 지원</u> 11. <u>전문상담교사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u> 12. <u>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자격연수, 재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u> 13. <u>전문상담교사 관련 학회 및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u>
⑭ <u>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u> 2. <u>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u> 3. <u>학생 인권보호 및 권리신장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시행</u>	⑭ <u>학교생활문화과장은-----</u> -----. 1. <u>학교 폭력(성폭력은 제외한다)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시행</u> 2. <u>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지도</u> 3. <u>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지원 및 분석·활용</u>			

14. <u>학교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u> 14의2. <u>삭 제</u> 15. <u>학교 체육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체육 수업 내 실화 지원</u> 16. <u>학교 운동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17. <u>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스포츠강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18. <u>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u> 19. <u>체육계열 교육과정 운영 학교 지원</u> 20. <u>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u> 21. <u>학교 예술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u> 22. <u>문화 소외 학생의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u> 23. <u>예술계열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24. <u>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지원 계획 수립</u>	14. <u>학교부적응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시행</u> <삭 제> 15. <u>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운영</u> 16. <u>위기학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u> 17. <u>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상담실 지원 및 평가</u> 18. <u>지역교육청 학생상담지원센터 지원 및 교육·평가</u> 19. <u>위기학생 장기위탁교육 지원 및 평가</u> 20. <u>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u> 21. <u>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부처간 및 국가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u> 22. <u>학생언어문화 개선사업</u> 23. <u>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u> <삭 제>	25. <u>예술교육공간 조성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u> <신 설>	⑮ <u>학생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학생 건강증진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u> 2. <u>학생건강 실태조사 및 건강검사제도 개선</u> 3. <u>학생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u> 4. <u>학생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u> 5. <u>건강증진학교 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u> 6. <u>학교 감염병 예방대책의 수립·시행</u> 7. <u>초·중등 학생자살 예방대책의 수립·시행</u> 8. <u>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관리·지원</u> 9. <u>초·중등 학생 정신건강 관련 연구 지원</u> 10. <u>초·중등학교 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u> 11. <u>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수급</u>
--	---	---	--

계획에 관한 사항

12.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3.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비
지원 계획 등 현황 조사에 관
한 사항

14.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대책의 수립·
시행

15. 학교급식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6.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및 우수 식재료 사용에 관한
사항

17.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의
운영

18. 학교 내 환경위생 관리에 관
한 사항

19. 교육환경평가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학교 환경 관련 질환 예방대
책의 수립·시행

21. 학교급식소 종사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22.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교육

<신 설>

등 학교 응급의료 관리에 관
한 사항

23.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원

⑯ 교육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
의 총괄

2. 교육복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및 교육복지 및 교육격
차 해소 관련 법령의 제·개
정

3.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총
괄·조정

4.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활용

5.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 개선
·정비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7. 초·중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의 운영

8.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
원 제도의 운영

9.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

의 전달체계 구축

10.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추
진

11. 초·중등학교 의무교육 기
본정책의 수립·시행

1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교육 지원·총괄

13.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14. 농어촌 초·중등학교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15. 도서·벽지 교육기관의 지
정·해제

16. 초·중등학교의 통합 운영
지원

17. 교육 부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추진 총괄

18. 교복가격 안정화 대책의 수
립·시행

19. 교육소외 계층·지역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20. 학력인정 다양화 기본정책
의 수립·시행

21.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에 대
한 교육 지원

22. 대안교육 관련 정책 수립 및

<신 설>

제도 개선

23.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
특제 등 운영 지원

24. 초·중등학력 검정고시정책
수립·시행 및 제도개선

25.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26. 북한이탈 학생 교육 지원

27.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28. 학생·학부모의 다문화 이
해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29. 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교육복지돌봄지원
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⑰ 유아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3.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
원

4.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5. 유치원의 설립·운영 지원

6.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

7. 국제기구와의 유아교육·보육정책 관련 교류·협력

8. 유치원 급식·안전 관련 제도 개선

9. 유아교육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10. 유아교육과정 운영 지원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

11.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12. 유치원 평가 지원

13. 육아정책연구소의 운영 지원

14. 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 개선

15. 유치원 신설·운영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16. 유치원회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투자 확대에 관한 사항

18.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신 설>

평가에 관한 사항

19.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립·공립 유치원장 임기 제도 및 공모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⑱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고등학교 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2. 초·중·고등학교 돌봄체계 관계 부처 협력 및 연계체계 구축

3. 초·중·고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4.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5.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및 지원

6.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7. 교육 소외계층의 방과후학교

<신 설>

참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8. 교육 기부(寄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9. 교육기부 관련 공익 법인 관리

10. 교육 기부 기관 인증제 운영

11. 시·도별 교육기부 운영 상담 지원

⑲ 특수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 특수교육통계 및 연차 보고

3.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

4.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교육 지원

5.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6. 통합교육 지원 및 장애 이해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7.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8. 특수교육대상자 평가 지원

9. 전공과(專政科) 운영 지원

10.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 지원

1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2.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13. 특수교육대상자 문화·예술·체육교육 내실화

1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5.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인력 운영 지원

16. 특수교육교원 수급 계획 및 연수 지원

17.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지원

18.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계획 작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특수학교 운영 지원

20. 특수교육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2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제8조(교육복지정책국) ①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복지정책국에 교육복지정책과·지방교육재정과·유아교육정책과 및 방과후돌봄정책과를 둔다. ③ (생 략) ④ 교육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2. 교육복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 관련 법령의 제·개정	22.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23. 특수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24. 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제8조(대학규제개혁국) ① 대학규제개혁국장은 ----- ----- ----- 보하되, -----. ② 대학규제개혁국에 대학규제개혁총괄과·대학재정과·대학운영지원과 및 대학경영지원과를 둔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학규제개혁총괄과장-----. 1. 대학 규제개혁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고등교육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운영 총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4. 초·중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의 운영 4의2.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제도의 운영 5.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전달체계 구축 6.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추진 7. 초·중등학교 의무교육 기본 정책의 수립·시행 8.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교육 지원·총괄 9.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 초·중등학교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11. 도서·벽지 교육기관의 지정·해제 12. 초·중등학교의 통합 운영	3. 대학규제개혁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4.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수립 및 대학의 학생정원 자율 책정기준 이행 점검 <삭 제> 5.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협력 및 지원 총괄 6. 대학 행정처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행정처분위원회의 구성·운영 7.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시행 8. 대학 구조개혁 관련 법령·제도 개선 총괄 9.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및 대학평가위원회 구성·운영·지원 10.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 수립 및 시행 11.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활성화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운영 12.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기
---	--	--	--	--

지원 13. 교육 부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추진 총괄 14. 교육가격 안정화 대책의 수립·시행 15. 그 밖에 교육복지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 설> ⑤ 지방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3. 국제·지방세 제도 및 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	관 지정 및 운영 지원 13. 고등교육 학문분야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14. 국립대학의 설치·이전·폐지·교명 변경에 관한 사항 15.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 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6. 공립대학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대학규제개혁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대학재정과장-----. 1. 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고등교육 재정 현황 분석·확충·총괄 및 재정효율화 방안 마련 3. 대학 세제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총괄·조정		4.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통교부금의 교부 및 교부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6. 특별교부금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학교회계 제도 및 예산·결산 분석에 관한 사항 8.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련 업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회계·결산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기준 및 결산 작성기준의 수립과 예산·결산 통계의 분석 11.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복식부기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2. 삭 제 13. 사립학교 재정결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4. 공립 초·중·고등학교 설	4. 대학 자율역량 강화 지원 사업의 관리 5.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6.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수혜 제한에 관한 사항 7. 국립대학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 기본 정책의 수립·시행 9.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삭 제>
---	--	--	--	--

<u>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u> <u>15.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통합 등 적정 규모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u> <u>16.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및 재정 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u> <u>17. 시·도교육청의 금고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u> <u>18.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유도 및 제도 개선</u> <u>19. 시·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및 지방교육 기능분류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u>20. 지방교육재정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u> <u>21. 지방교육재정의 진단·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등 지방교육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u> <u>22. 지방교육재정 통합공시 및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u> <u>23. 시·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u>	<u>사항</u> <u>24. 초·중·고·특수학교 학교발전기금 제도에 관한 사항</u> <u>⑥ 유아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유아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u> <u>2.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u> <u>3.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u> <u>4.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시행</u> <u>5. 유치원의 설립·운영 지원</u> <u>6.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u> <u>7. 국제기구와의 유아교육·보육정책 관련 교류·협력</u> <u>8. 유치원 급식·안전 관련 제도 개선</u> <u>9. 유아교육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u> <u>10. 유아교육과정 운영 지원인</u>	<u>⑥ 대학운영지원과장-----</u> <u>-----.</u> <u>1. 대학의 학사제도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u> <u>2. 대학 편입학 제도 운영·개선</u> <u>3. 약학대학의 학사제도 운영·개선</u> <u>4. 대학과 고등학교와의 연계 심화과정 운영 지원</u> <u>5. 대학 원격교육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u> <u>6. 국립대학 총장 임명 제정에 관한 사항</u> <u>7. 국립대학 교원 정원 배정 및 총액인건비제, 성과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u> <u>8. 국립대학 조교 정원 배정 및 연구성과급 지원에 관한 사항</u> <u>9. 대학 강사제도 개선·재정 지원 사업 추진 및 비전임교원·조교제도 개선</u> <u>10. 대학교원의 인사 제도 개선</u>
---	---	---

<u>력 활용에 관한 사항</u> <u>11.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u> <u>12. 유치원 평가 지원</u> <u>13. 유아정책연구소의 운영 지원</u> <u>14. 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 개선</u> <u>15. 유치원 신설·운영 등에 관한 증장기 계획의 수립·시행</u> <u>16. 유치원회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u>17.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투자 확대에 관한 사항</u> <u>18.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u> <u>19.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20. 국립·공립 유치원장 임기</u>	<u>및 복무에 관한 사항</u> <u>11. 국립대학 소속 대학회계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u> <u>12. 대학교원 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대학교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총괄·조정</u> <u>13. 대학인권센터 제도 운영·개선</u> <u>14. 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의 수립·시행</u> <u>15. 국립대학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u> <u>16. 의과대학 설립 부대조건 관리 및 협력병원 제도 개선 추진</u> <u>17. 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제도 및 공모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2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u> <u>⑦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기본 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u> <u>2. 온종일 돌봄체계 관계 부처 협력 및 연계체계 구축</u> <u>3.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 계획의 수립·시행</u> <u>4. 방과후학교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u> <u>5. 방과후학교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및 지원</u> <u>6.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발굴·육성</u> <u>7. 교육 소외계층의 방과후학교 참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u>	<u>⑦ 대학경영지원과장-----</u> <u>-----.</u> <u>1. 사립대학·법인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시행</u> <u>2. 사립대학·법인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u> <u>3. 사립대학의 설치·폐지·통합에 관한 사항</u> <u>4.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u> <u>5. 사립대학의 위치변경 및 분교 설치 인가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u> <u>6.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u> <u>7.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 지원 및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u>
---	--	--	---

8. 교육 기부(寄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9. 교육기부 관련 공익 법인 관리 10. 교육 기부 기관 인증제 운영 11. 시·도별 교육기부 운영 상담 지원 <신 설>	사항 8. 사립대학·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 9. 사립대학·법인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0. 사립대학 총장 임명에 관한 사항 11.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12. 사립대학 내 민자유치사업 지원 13.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14.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원 15.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지원 16.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분쟁 사학의 정상화 심의 지원 17. 사학발전을 위한 부 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원 18. 사학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추진 19.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및 운	영 지원 <삭 제> 제8조의2(학생지원국) ① 학생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학생지원국에 교육기회보장과·학교생활문화과·학생건강정책과 및 특수교육정책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교육기회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소의 계층·지역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학력인정 다양화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에 대한 교육 지원 4. 대안학교 운영 지원 및 대안교육 제도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운
---	--	--

영 지원 6. 초·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시행 7.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폐지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8. 북한이탈 학생 교육 지원 9.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10. 학생·학부모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1. 삭제 1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1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관리 및 지원 14.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 15. 초·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국제협력 16. 초·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결과자료 관리 및 분석 17. 그 밖에 학생지원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학교생활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폭력(성폭력은 제외한다)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시행 2.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지도 3.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지원 및 분석·활용 4.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5.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간의 협조·지원 6.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7.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의 개발·보급 8. 학생안전강화학교의 운영 지원 9.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생 보호 대책의 수립·시행 10. 인터넷 문화·윤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12. 전문상담교사 관련 기본계	영 지원 <삭 제>
---	--	--------------------------------

<u>획의 수립·시행</u>
<u>13.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자격 연수, 재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u>
<u>14. 전문상담교사 관련 학회 및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u>
<u>15.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시행</u>
<u>16.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운영</u>
<u>17. 위기학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u>
<u>18.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상담실 지원 및 평가</u>
<u>19. 지역교육청 학생상담지원센터 지원 및 교육·평가</u>
<u>20. 위기학생 장기위탁교육 지원 및 평가</u>
<u>21.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u>
<u>22.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부처 간 및 국가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u>
<u>23. 학생언어문화 개선사업</u>
<u>⑥ 학생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학생 건강증진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u>
<u>2. 학생건강 실태조사 및 건강 검사제도 개선</u>
<u>3. 학생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u>
<u>4. 학생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u>
<u>5. 건강증진학교 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u>
<u>6. 학교 감염병 예방대책의 수립·시행</u>
<u>7. 학생자살 예방대책의 수립·시행</u>
<u>8.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관리·지원</u>
<u>9. 학생 정신보건 관련 연구 지원</u>
<u>10. 학교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u>
<u>11.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u>
<u>12. 학교급식 영양기준 및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u>
<u>13.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u>

<u>14.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대책의 수립·시행</u>
<u>15. 학교급식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u>
<u>16.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의 운영</u>
<u>17. 학교 내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u>
<u>18. 교육환경평가 제도 운영 및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운영</u>
<u>19. 학교 환경 관련 질환 예방대책의 수립·시행</u>
<u>20. 학교급식소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u>
<u>21.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교육 등 학교 응급의료 관리에 관한 사항</u>
<u>22.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원</u>
<u>⑦ 특수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u>

<u>2. 특수교육통계 및 연차 보고</u>
<u>3.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u>
<u>4.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교육 지원</u>
<u>5.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 지원</u>
<u>6. 통합교육 지원 및 장애 이해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u>
<u>7.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u>
<u>8. 특수교육대상자 학업성취도 평가</u>
<u>9. 전공과(專攻科) 운영 지원</u>
<u>10.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 지원</u>
<u>1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u>
<u>12.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u>
<u>13. 특수교육대상자 문화·예술·체육교육 내실화</u>
<u>14.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u>
<u>15. 특수교육 보조인력 활용 및</u>

<u>지원</u> 16. 특수교육교원 수급 계획 및 연수 지원 17.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지원 18.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특수학교 운영 지원 19. 특수교육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20.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2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22.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및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23.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기본 계획 수립·시행 24.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지원 제9조(평생직업교육국) ① 평생직업교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제9조(교육자치협력안전국) ①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 ----- ----- ----- -----	나등급으로 한다. ② 평생직업교육국에 평생학습정책과·직업교육정책과·진로교육정책과 및 이러닝과를 둔다. ③ (생 략) <신 설> <신 설>	-----. ② 교육자치협력안전국에 교육자치협력과·지방교육재정과·교육안전정책과·교육시설과를 둔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자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지방교육자치의 강화 및 협력 3.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운영 4.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정원(교원은 제외한다) 관리 6.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복무·급여·교육훈련 제도 개선 7.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
---	---	---	---

· 진단 9.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시·도 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11. 학교 평가제도 개선 및 지원 12.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3. 교원단체의 설립·해산 및 운영 지원 14.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15.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조정 및 갈등 관리 16.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7. 교육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8. 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19. 유치원 및 초·중등 국립학교에 소속된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0. 시·도 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21. 시·도 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총액인건비 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2.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인사관리 지원,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교육협력안전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진흥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생교육 관련 법령의 제·개정 2.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3.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出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0. 시·도 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21. 시·도 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총액인건비 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2.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인사관리 지원,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교육협력안전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지방교육재정과장----- -----. 1.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3. 국세·지방세 제도 및 교부
---	---	---

捐) 및 운영 지원	금 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지원	수립과 예산·결산 통계의 분석
4. 시·도평생교육협의회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및 시·군·자치구평생학습관의 운영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4.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1.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회계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평생교육백서 발간	5. 보통교부금의 교부 및 교부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12. 자격체제 및 국가역량체제의 구축·운영	12.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공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6. 특별교부금의 교부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지원 및 활용	13. 공립 초·중·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7. 문자해독교육 실시 및 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7. 학교회계 제도 및 예산·결산 분석에 관한 사항	14. 민간자격 관리 및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1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통합 등 적정 규모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8.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련 업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교육훈련과정 이수에 따른 공인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15.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및 재정 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9. 시간제 등록제,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제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9.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회계·결산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6. 평생학습계좌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6. 시·도교육청의 금고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평생교육 관련 시설·단체 및 공익법인의 운영 및 육성,	10.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기준 및 결산 작성기준의	17.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지원 및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7.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유도 및 제도 개선
		18.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및 지역사회 학습모임 육성 지원	18. 시·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및 지방교육 기능분류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9. 평생교육 바우처 등 저소득	19. 지방교육재정의 분석·평가

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충 지원	에 관한 사항	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20. 지역사회학교 등 초·중등학교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	20. 지방교육재정의 진단·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등 지방교육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평생직업교육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1.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운영 지원	21. 지방교육재정 통합공시 및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직업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교육안전정책과장-----
22. 평생학습박람회 등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2. 시·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 직업교육 정책의 총괄·관리 및 연계·조정	1. 학교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23.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 기업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3. 초·중·고·특수학교 학교발전기금 제도에 관한 사항	2.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2.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4. 학원, 교습소 및 과외교습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삭 제>	3.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촉진, 일반 고등학교 직업과정 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	3. 학교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25. 시·도교육청 학원 지도단속 정책의 수립·시행		4. 고등기술학교의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범 정부차원의 안전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26. 학원 관련 통계 관리 및 한국학원총연합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 제·개정	5. 학교안전과 관련한 재난대비 매뉴얼과 안전관련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26의2. 한국형 온라인 대중강좌(K-MOOC)의 구축·운영		6.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및 해외취업·인턴십 지원에 관한 사항	6. 행정안전부 등 안전과 관련한 재난상황관리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운영
26의3. 온라인 대중강좌 등을 활용한 산업연계 단기 직무교		7.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체제 개편 지원 및 제도 개선	7. 부내 상황실 상황관리 관련 업무의 계획 수립·종합 및

8. 거점 특성화고등학교의 육성 및 소규모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조정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9.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8. 학교안전 위기상황 종합관리	16. 정부부처·산업체·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육성에 관한 사항	16. 각급 학교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센터 운영 지원	9. 학교안전 관련 위기상황의 접수·전파·보고	17.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시행	17.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안전관리업무 지도·감사
11.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및 교과용도서의 개발·운영	10. 학교안전 관련 국가재난 대비 훈련의 준비·계획·실시·평가	18. 국가 수준 직업기초능력 평가제도의 수립·시행	18. 학생안전지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2.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 교재의 개발 및 개선	11. 소관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 업무의 종합·총괄	19.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기초능력의 함양 및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13.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제도에 관한 사항	20. 산업체 인사의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14.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취업기능 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13.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21. 전국단위 기능 경진대회 및 고등학교 직업교육 연구대회의 운영 지원	
15.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전국 단위	14.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운영 지원 및 지도	22.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병역제도에 관한 지원	
	15. 학교 안전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3.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⑦ 진로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	⑦ 교육시설과장-----

항을 분장한다.	-----.	등 진로교육 정보망 운영 지원	위한 공제사업 실시
1. 진로교육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1. 교육시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지원	10. 진로 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10. 교육시설의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1의2. 대학생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삭 제>	11.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	11. 초·중등학교 시설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 초·중등학생의 진로교육 촉진 및 지원	2. 교육시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2. 초·중등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12. 교육 차관(借款) 사업의 관리
3.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제·학기제 및 중학교 자유학기 진로탐색 활동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13. 진로체험기관 발굴·지원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3.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기준·현황 관리 및 공동실험실습관 운영 관리
4. 진로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국립학교 시설 예산 편성 및 관리	14. 초·중등학생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지원	14.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사업 추진
5. 학교급·유형별 진로교육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시설예산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15. 진로교육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15. 대학 기숙사 확충 방안 수립·시행
6.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 및 진로지도 관련 인력 활용 지원	6. 국립대학 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16.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6. 대학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7. 진로교육 현황 조사 등 진로교육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7. 학교복합시설 정책 수립·시행
8.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운영 지원	8.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 운용	18. 성인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8. 디지털교육 체제 전환, 교육과정 연계, 개별화 학습 지원을 위한 노후학교 개선 및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9. 진로체험 정보제공 시스템	9.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19.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	19.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위한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운영

<신 설> ⑧ 이러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분야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2. 학교인터넷망 고도화 지원 3.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진흥·육성 지원 4. 디지털교과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5. 초·중등학교 교육정보 콘텐츠 및 디지털교과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6.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7.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 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 8. 사이버 학습 운영 지원 기본	20. 국립대학 노후선박 건조 투자계획 수립 및 시행 21. 교육시설 분야의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2.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운영 지원 및 지도 23. 부서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삭 제>	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시스템의 개발·운영 지원 9. 한국교육방송공사 고교 강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10. 저소득층·소외계층의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학습 지원 11. 사이버 학습 및 온라인 수업 운영 관련 교육정보 격차해소 지원 12. 한국방송통신대학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13. 한국방송통신대학 체제 개편, 학사관리 및 학습관 운영 지원 14. 사이버대학(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5.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전환 및 정원 조정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6. 사이버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임원취임 승인, 정관변경, 재산
--	---	---

처분 허가 등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17. 사이버대학의 학사 및 입학 관련 제도 개선 18. 사이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평가 19. 사이버대학 특성화 지원 및 콘텐츠 개발·공동활용 지원 20.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아세안 공동운영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 21.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협력 및 교육정보 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2. 국제기구 및 다자 간 이러닝 협력사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정보화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이러닝 관련 박람회·국제세미나 등 총괄·지원 23. 이러닝 관련 비영리법인 지도·운영·지원 및 민간기업과의 정보화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	제10조(교육안전정보국) ① 교육	안전정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안전정보국에 학교안전총괄과·교육시설과·교육정보화과 및 교육데이터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학교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2.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 학교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4. 법 정부차원의 안전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5. 학교안전과 관련한 재난대비 매뉴얼과 안전관련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6. 행정안전부 등 안전과 관련	제10조(삭제)
--	---------------------------	--	-----------------

<u>한 재난상황관리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u> 7. 부내 상황실 상황관리 관련 업무의 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8. 학교안전 위기상황 종합관리 9. 학교안전 관련 위기상황의 접수·전파·보고 10. 학교안전 관련 국가재난 대비 훈련의 준비·계획·실시·평가 11. 소관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 업무의 종합·총괄 12.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제도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14.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5. 학교 안전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6. 각급 학교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17.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안전관리업무 지도·감사

17의2. 학생안전지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8. 그 밖에 교육안전정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 학교 시설사업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 2. 교육시설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3. 대학시설 예산편성 및 관리 4. 시설예산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5. 국립대학 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의 에너지절약 추진 총괄 8. 초·중등학교 시설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9. 교육 차관(借款) 사업의 관리 10.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시
--

<u>설안전원의 운영 지원 및 지도</u> 11.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기준·현황 관리 및 공동실험실습관 운영 관리 12.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사업 추진 13. 대학 기숙사 확충 방안 수립·시행 14. 대학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 교육정보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정보 및 정보화 정책 기획·총괄·조정 2. 교육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교육 정보화 관련 제도 및 표준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운영 5. 교육 관련 기관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운영 5의2. 교육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의3. 교육정보화 사업 사전협

<u>의제도 운영</u> 5의4. 교육정보화 예산의 검토 및 조정 6.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7.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보급 8.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온라인 교육 민원서비스 운영 지원 9.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학생·학부모 서비스 제공 10. 입학 전형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정보의 상급학교에의 제공 11.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 12. 대학 교육전산망협의회 운영 지원 13. 부 내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4. 부 내 포털, 온나라시스템, 맞춤형 업무시스템의 구축·운영, 대표 홈페이지의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운영 지원

16. 교육 관련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정책 수립·시행과 관련 법령·제도 개선
17.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교육기관 보안관계 실시
18.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9.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및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관리
20. 교육 관련기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보호
21. 교육 관련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수준에 대한 진단·점검
22. 교육 관련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23. 교육 관련기관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보안적합성 검증 및 보안취약점 점검·분석
24. 교육 관련기관의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훈련 계획 수립·시행

25. 교육 관련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처리
26. 교육 관련기관의 보안서버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⑦ 교육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기본통계의 기획·총괄·조정
2. 교육기본통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3. 교육기본통계 조사 및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운영
4. 교육기본통계 조사기준 및 표준화된 조사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5. 교육기본통계의 운영
6. 교육 관련 주요지표 개발 및 관리
7. 교육 관련 예측통계 산출 및 제공
8. 국제교육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9. 교육통계의 통합 조정 및 품질관리 지원
10. 교육정보통계위원회의 구성

· 운영
11. 교육정보공시(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기획·총괄·조정
12. 교육정보공시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13. 교육정보공시 시스템의 구축·운영
14. 교육정보 공시기준 및 표준화된 공시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15. 교육정보공시제의 운영
16. 교육정보통계 활용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17.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축·운영
18. 통계 기반 교육정책·연구 지원
19. 교육 관련 정보의 개방에 관한 사항
19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9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20. 사교육비 조사 실시 지원 및 결과 분석
제13조(국립특수교육원) ① ~ ③ (생략)
④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10.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11. ~ 13. (생략)
⑤·⑥ (생략)
⑦ 장애인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신설>
<신설>
10. (생략)
제14조(중앙교육연수원) ① ~ ④ (생략)
⑤ 교원능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제13조(국립특수교육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8.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9. ~ 11. (현행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9. (현행과 같음)
10.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11.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14조(중앙교육연수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5. (현행과 같음)

6. <u>교육연수기관</u> 평가 계획의 수립·시행	6. <u>교육연수기관</u> 인가·운영 지원 및 ---
7. 8. (생략)	7. 8.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6명(6급 3명, 7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8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삭 제>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략)	제2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u>인성체육예술평가과장</u> , <u>학생건강정책과장</u> , <u>진로교육정책과장</u> 및 <u>교육정보화과장</u> 은 임기제공무원	② -----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 ----- 특수교육정책과장 및 교육시설과장-----

으로 보할 수 있다.	-----.
제10장 <u>한시조직 및 한시정원</u>	제10장 <u>한시정원</u>
제23조(미래교육추진담당관) ① 미래교육추진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삭 제>
② 미래교육추진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24조(한시정원) 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제23조(한시정원) ① -----
②·③ (생략)	-----
<신 설>	----- 2023년 12월 31일-----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립대병원·지역 공공의료기관 협업체계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두며, 별표 9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교육부령 제184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부칙	교육부령 제184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부칙
제2조(종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u>디지털소통팀</u> , <u>교육공무근로지원팀</u> 및 <u>사회정책분석팀</u> 은 각각 2024년 6월 24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종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u>보좌하는 사항</u> , <u>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u> , <u>사회정책분석팀장이 사회정책협력관을 보좌하는 사항</u> 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u>홍보담당관</u> 이, <u>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u> 이, <u>사회정책분석팀장</u>	② ----- 보좌하는 ----- 홍보담당관-----

이 보좌하는 사항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이 각각 보좌한다.	-----
	-----.

신·구정원대비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33	640	+7
특정직 계	85	86	+1
교육연구사	53	54	+1
일반직 계	541	547	+6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6	47	+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189	194	+5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식품위생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33	134	+1
사무운영서기보	11	10	-1

[별표 1의3]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교육부령 제28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41	648	+7
특정직 계	93	94	+1
교육연구사	59	60	+1
일반직 계	541	547	+6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6	47	+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189	194	+5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식품위생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33	134	+1
사무운영서기보	11	10	-1

[별표 1의4]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교육부령 제28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47	654	+7
특정직 계	93	94	+1
교육연구사	59	60	+1
일반직 계	547	553	+6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6	47	+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189	194	+5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식품위생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36	137	+1
사무운영서기보	11	10	-1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국립특수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3	54	+1
특정직 계	32	33	+1
교육연구사	20	21	+1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중앙교육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7	46	-1
특정직 계	13	12	-1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9	8	-1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6	27	+1
일반직 계	26	27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5	+1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국립국제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74	75	+1
일반직 계	52	53	+1
3급 또는 4급 이하	51	52	+1

[별표 9]
 교육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3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교육부 공무원 한시정원표	(제24조 관련)	(제23조 관련)	
1. 제23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1. 제24조 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1. 제23조 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2. 제23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2. 제24조 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2. 제23조 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행정사무관	<신 설>	1	+1

3. 제23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4월 30일)	3. 제24조 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4월 30일)	3. 제23조 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4월 30일)	
총계	<신 설>	1	+1
일반직 계	<신 설>	1	+1
4. 제23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4. 제23조 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4. 제23조 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4. 제23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